

총괄

연구위원 이진면

경제금융

부연구위원 신종협·유진아

선임연구원 이정환

보험시장

수석연구원 김세환

연구원 박정희·김세중

국내제도

연구원 박정희

해외제도

선임연구원 이정환

연구원 최이섭

보 험 동 향

2008년 가을호

목 차

테마진단	1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1
기업의 바람직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과제	15
경제금융 동향	25
1. 해외 경제	25
2. 국내 경제	38
3. 금융 경제	46
보험시장 동향	51
1. 보험산업 총괄	51
2. 생명보험	53
3. 손해보험	64
4. 세계보험시장	76
국내제도 동향	80
해외제도 동향	103
1. 북미 동향	103
2. EU 동향	115
3. 일본 동향	124
4. 기타 동향	133
통계표	143

테 마 진 단

◆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김세환 수석연구원, 황진태 부연구위원

1. 서 론

온실가스의 증가와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현상으로 인류가 겪게 되는 자연재해의 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음. 이에 따라 발생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여부가 해당 국가의 경제력, 더 나아가 금융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보험산업 또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해외 주요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은 어떠한 것이 있는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와 토지이용의 변화로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야기되고, 각종 자연재해 특히, 극단적인 기상사건(extreme weather event)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보험산업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유형으로는 기온의 급상승, 폭풍, 폭우 및 홍수, 가뭄 등이 있으며, 2차적 자연재해는 눈사태, 낙석, 홍수에 의한 산사태, 가뭄에 의한 산불 등이 있음.
- 자연재해 발생 건수와 관련 피해액은 최근 30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근래에 들어서는 극심해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음.
- 보험산업 내에서도 기후변화가 최근 더욱 가속화되어 미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음.
- Lloyd's of London 회장은 기후변화가 보험시장의 최고 이슈라고 말하였고, 유럽

테마진단

최대보험사인 Allianz는 기후변화가 향후 10년 이내에 극단적 사건으로 인한 부분 손해를 37% 증가시켜 실적이 악화된 연도에는 총부보손해액이 4천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는 이 금액을 1조 달러로 추산하였음.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여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이용해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21세기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할 뜻을 이미 밝히고 있음.

○ 은행권에서는 기후 변화를 억제하거나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맞게 최근 그린마케팅을 펼치고 친환경 이미지의 금융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음.

□ 기후변화는 보험산업에 잠재적 위험도 되지만 거대한 신사업기회를 창출하기도 하므로 보험회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객들의 니즈 변화, 기업과 개인이 일상적 리스크 변화를 이해한 후 기후 관련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손실방지 솔루션과 상품 개발 등의 미래전략을 마련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험회사와 해외 주요 보험회사들의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전략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기후변화에 따른 향후 과제를 살펴볼 것임.

2.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질병 등의 증가는 보험산업에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기후변화가 향후 보험산업의 기회적인 측면 또한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Munich Re는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지난 40년간 7배 증가

하였으나 피보험손해는 14배 증가하였다고 분석하면서, 장래 손해액 전개의 주된 동력은 기후변화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음.

- 지난 반세기 동안 극단적 기상이변의 증가로 재물보험의 총손해액 및 부보손해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총손해액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해안지역의 부동산 건설, 피보험자산의 인플레이션, 전체 피보험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의 언더라이팅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보험사업 부분임.

- 특히 기후변화는 기상의 장기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상기상재해(extreme weather event)의 빈도와 심도를 증가시켜 기상 관련 대재해 손실의 가능성을 높임.

- 전통적으로 보험산업은 장래의 리스크를 부보하고 언더라이팅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과거 손해통계자료에 의존하였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가이드가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격의 기초가 되는 리스크 모형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저평가되는 만큼 손해액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어 부보가능성 및 담보여력도 저하될 것임.

□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상품의 언더라이팅에 기후변화가 미친 실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영국의 한 조사에서는 겨울철 기상 관련 교통사고의 비중이 1998-99년 전체 사고 중 8%였고, 2001-02년 12%, 2004-04년 전반기 동안 25%로 나타났으며, 2000년 가을의 수해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2,500만 파운드 증가하여 점차 기상관련 손해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성 질병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천식발생률이 증가하고 극단적인 폭한과 폭서로 인해 조기사망을 가져오는 등 기후변화가 사망률(mortality)과 이환율(morbidity)에도 영향을 주게 됨.

- 스웨덴의 Karoliska 의과대학의 의료연구자들은 기온이 상승하면 전세계적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 증가로 건강보험회사의 리스크 노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테마진단

- 기후변화가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에 미치는 순수 영향은 잠재적인 영향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아직은 명백하지 않으나, 최근 몇 년 간의 폭서로 인한 사망자수가 급증한 경험으로 볼 때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회요인보다는 위협요인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연금보험 분야는 그 장기성으로 인해 인구통계학 및 경제학적 가정에 매우 민감하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 시 미세하나마 유리한 영향을 받을 것임.
- 기후변화가 생명 및 손해보험분야의 언더라이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험종목별로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는 보험회사에게 위협적인 요소이자 동시에 기회적인 요소가 상존함.
-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의 증가 및 여름철의 장기화로 인하여 말라리아 및 피부암 발생의 증가, 식중독 발생 증가, 이국적 질병 증가 등으로 인해 생명보험분야에서 손실증대 가능성이 존재하고, 폭우 및 폭서 등에 의한 자동차 사고발생 빈도 증가, 악천후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 등으로 손해보험분야에서도 손실이 예상됨.
- 그러나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상승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겨울철 신선 식품의 공급 확대로 보험계약자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고 여행횟수의 증가도 가능하며, 안개 및 서리의 감소에 의한 자동차 사고발생 빈도의 감소 등 생명 및 손해 보험회사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기도 함.
- 위협적인 기후변화가 오히려 보험회사들에게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에 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음.

<표 1> 건강/생명보험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위험요인	기회요인
•여름철 열에 의한 스트레스와 사망률 증가	•겨울철 이환율과 사망률 감소
•실외 라이프 스타일의 증가로 피부암 발생 건수 증가	•여름 고온화로 보다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추구
•여름철 장기·고온화로 식중독 발생 증가	•많은 종류의 신선 식품 이용가능성 증대
•기온 증가로 말라리아 출현 증가	
•가뭄 발생 지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이 많아져 이국적인 질병의 증가	

자료 : A Changing Climate for Insurance, ABI, 2004. 6.

<표 2> 손해보험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보험종목	위험	기회
자동차보험	•폭우, 폭서 등 기상관련 사건으로 인한 손해발생 빈도의 증가 •여름의 장기 고온화로 자동차 운행거리의 증가	•안개 및 서리의 빈도 감소로 기상 관련 손해 발생의 감소 •운행환경의 악화로 운전기술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빈도와 심도가 전반적 감소 •고유가나 환경, 공공운송 개선, 이상기후에 대한 관심으로 운행거리 감소
여행자보험	•수온 증가 등 해상의 아열대화와 겨울철 온난화로 해외여행 수요 감소	•여름의 고온화와 적극적인 라이프스타일로 보다 활동적인 휴가 추구 •기상 관련 여행 해약 시 고객을 보호하려는 수요 증가
건설공사보험	•폭풍과 강우로 인한 손해발생 증가 •자재에 미치는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및 새로운 시스템의 고장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으로 채택된 신기술로 손해발생 감소
임원배상 책임보험	•민사소송 또는 규제를 통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책임 부담	•선관자의무(duty of care) 증가 예상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근로자재해 배상책임보험	•악천후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	•겨울철 온난화로 인한 근로자 사기 증가

자료 : A Changing Climate for Insurance, ABI, 2004. 6.

3.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향후 과제

해외 주요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언더라이팅 리스크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 저탄소 녹색경영 등을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일부 보험회사들은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같은 몇몇 정책성 재해보험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외 뚜렷한 대응전략은 찾아보기 어려움. 이에 해외 주요 보험회사들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미래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해외보험회사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기후변화에 따른 언더라이팅 리스크 관리 전략

- ☐ 종래 보험회사의 일차적인 관심은 금융적 리스크 관리(면책조항 부가, 가격 인상, 파생상품 활용 등)에 주어졌으나, 기후변화로 물리적 리스크 관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
 - FM Global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허리케인 손해방지 권장 기법 모두를 실시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1/8의 손실만을 입어 250만 달러의 비용으로 5억 달러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음.
 - Allstate과 State Farm 등 많은 보험회사들이 에너지 효율성 및 대재해에 내성을 갖추기 위한 건축법규의 강화와 채택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현재 수해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 수리가 비용중립적인 경우에만 수재복원건물의 계약복원(reinstatement)을 해주고 있음.
- ☐ 기후변화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행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유발시키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종류의 보험조건과 면책조항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 많은 보험회사들이 운행거리기준 자동차보험상품(pay-as-you-drive insurance products)을 출시하여 사고율 감소 뿐 아니라 에너지 이용량 감소, 도난 차량 추적,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리스크 평가 시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고객기업의 전략 존재 여부와 배출량관리 등과 같은 준비상태를 평가하는 보험회사가 늘어나고 있음.
- Marsh는 기후변화와 임원배상책임 리스크 평가 시 경영진에게 기후관련 리스크에 대한 의무 할당 여부, 기후변화 문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배출량 프로파일을 측정·공시·보고하는 프로세스, 미래 규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음.
- Swiss Re는 탄소공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고객이나, 탄소리스크 공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고객에게 임원배상책임보험 언더라이팅 시 기후변화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고 있음.
- 2007년에 자산규모가 총 41조 달러나 되는 기관투자자들이 서명한 제5년차 CDP가 실시되었으며, 주요 서명 투자기관은 Goldman Sachs, Mogan Stanley 등이며 한국에서는 국민은행만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음.

2) 에너지 절약과 재생 및 청정에너지 개발 전략

- 청정에너지 서비스의 이용자 및 공급자를 위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제공(또는 기존 보험계약에 조건 부과)하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장래 수익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금융조달이 용이해 질 수 있음.
- State Farm이나 Hartford Steam Boiler는 미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후원을 받는 ENERGYSTAR[®] 부착 프로그램 등 자발적인 프로그램에 최초로 참여하여 에너지 배출량을 50% 이상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있음.
- Travelers를 비롯한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고 있음.
- Royal & SunAlliance는 GPS시스템을 차에 내장,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 연료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제공 계획을 시범 실시 중임.
- AXA는 풍력발전시설 종합보험을 개발하여 2006년에 1,400만 달러의 보험료 수익을 올렸으며, Munich Re는 지열에너지 기업용탐사리스크보험을 성공적으로 시

험 판매함.

3)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저탄소 경영 전략

- ☐ 탄소배출량 감축 및 거래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는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사업 및 이행리스크가 있으며 새로운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이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음.
- o 신생 탄소시장에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초기 사례로 Aon은 기후변화솔루션그룹을 설치하여 고객이 배출권 거래시장의 참여를 위한 탄소리스크 관리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음.
- o Swiss Re는 혁신적인 에너지 관리전략을 고안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Sompo Japan은 사내 에너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탄소과산화물 배출량을 22% 절감함.
- o Aviva와 Royal & SunAlliance는 2006년에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함.
- o Rutherford는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며 영업상 100% 탄소 중립을 달성한 최초의 보험회사임.

4) 녹색경영 및 관리 전략

- ☐ 2010년에 400억 내지 500억 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건물은 실내 공기 질 개선부터 재해 복원력 제고까지 일반건물에 비해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이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 o 미국 Fireman's Fund는 미국보험회사 최초로 비거주건물에 대한 “Greenguard”라는 신상품을 출시하여 신축 녹색건물, 녹색 리노베이션 건물을 대상으로 보험료 4%를 할인하여 주고 있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시설교체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o Lloyd's of London 신디케이트 중 하나는 주택보험, 개인상해보험 및 여행자보험의 보험료 10%를 환경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상품을 팔고 있음.
- ☐ 일부 보험회사는 녹색 경영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화 수단을 통해 에너지를 아끼고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이득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음.

- o West Bend Mutual Insurance Company의 경우 에너지 관련 환경개선조치 이후 청약, 배서, 갱신, 보험료산정 등의 업무에서 생산성이 7% 증가하였음(Kroner 등, 1992).

5) 기후변화 관련 사회적 책임투자 및 활동 전략

- ☐ 일부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환경적·사회적·지배구조적 리스크(ESG risk)를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있음.
 - o F&C Investments 등 일부 자산관리회사들은 ESG문제를 취급하는 전문가팀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위해 윤리투자상품, 기후변화펀드, 탄소거래상품 등 특수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 ☐ 공공정책 토론에 보험회사가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1995년 4월 베를린 기후정상회담(Climate Summit)으로 Munich Re, Storebrand, Swiss Re 및 Lloyd's of London 이 참여하였음.
 - o 그 후 곧바로 UNEP는 수십 개의 보험회사를 소집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취약성 및 구체적 권장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음.
 - o 국제정책기관 및 금융서비스 부문 동업사에 대한 정보 캠페인을 지향하는 2007년 UNEP의 발의안에는 15개국을 대표하는 35개의 보험관련 회원사가 참여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로는 유일하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제2금융권은 삼성투자신탁이 참여하고 있음.
 - o 세계 기후변화 원탁회의(Global Roundtable on Climate Change)에서는 전세계 기업경영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활동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서명 보험회사는 Allianz, ING Group, Marsh, Munich RE, Swiss Re임.

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기후변화에 대한 운영 현황

- ☐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기후변화관련 보험상품은 주로 자연재해관련 정책성

테마진단

보험이 해당됨.

-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로 태풍, 폭우, 가뭄과 같은 기상재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농작물, 시설물, 양식수산물에 큰 피해를 입고 있음.
- 이러한 기후변화관련 자연재해 리스크 전가를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책성 보험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02년에 434.4%, 2003년에 290.9%, 2007년에 110.9%의 손해율이 발생하였는데, 이 손해율의 상당 부분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제도로, 주관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임.
 - 보험사고의 리스크 요소로는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가 있음.
 - 보험가입대상으로는 2008년 6월 기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뽕은감, 밤, 참다래, 자두, 고추, 콩, 감자, 양파, 수박이 해당됨.
 - 원보험사업자는 농협이 맡으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코리안리가 재보험사업자로 참여함.
 -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예상수확량의 최대 70% 또는 80%를 보장하며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만약 손해율 180% 초과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국가재보험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함.
-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근거하여 태풍과 같은 풍수해로부터 입은 시설물 복구 지원을 위한 정책성 보험제도로 소방방재청이 주관함.
 - 보험사고의 리스크 요소로는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집중호우, 대설이 있음.
 - 보험가입대상으로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가 해당됨.
 - 원보험사업자로서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참여하며, 코리안리가 재보험사업자로 참여함.

- 보험사고 발생 시 기준복구금액의 각각 50%(주택만 해당), 70%, 90%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 각각에 대하여 전파의 경우 100%, 반파의 경우 50%, 소파의 경우 25%를 지급하고 만약 180% 초과 손실 발생 시 국가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손실보전을 하나 이러한 국가적 손실 보전이 국가재보험제도에 근거한 것은 아님.
- 보험료는 기준복구금액 대비 50% 및 70% 기준형 상품 가입의 경우에는 순보험료의 50%, 그리고 기준복구금액 대비 90% 기준형 상품 가입 경우에는 순보험료의 40%를 정부가 지원하고 또한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100% 전액 지원함.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어민들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제도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음.
- 보험사고의 리스크 요소로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가 있으며, 어병(漁病)은 특약 사항임.
- 보험가입대상으로는 2008년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넓치를 시범대상으로 하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원보험사업자는 수협이 맡으며, 코리안리가 재보험사업자로 참여함.
-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예상생산량의 70%를 보장하고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만약 손해율이 140% 초과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국가재보험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함.
- 상기한 정책성보험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민영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자체 보험상품개발이나 경영전략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에 있음.

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향후과제

- 현재로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편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전략은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기후 변화가 새로운 고객니즈를 창출하고 기상재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를 넓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기후패턴의 변화와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려는 노

테마진단

력은 전세계적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기후변화는 지리적으로 새로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 기상사건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러한 변화를 간파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야 함.
- 향후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언더라이팅 리스크 관리와 환경보존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녹색경영, 재생 및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우리나라 보험회사에게 요구됨.
- GPS 시스템을 이용한 운행거리기준 자동차보험상품(pay-as-you-drive insurance products)을 도입하여 보험료 차등 적용을 실시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및 자동차 사고발생 빈도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와 함께 풍력이나 조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도 필요함.
- 고객기업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녹색경영이 필요함.
- 탄소배출권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탄소배출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보장 및 개발도상국의 청정개발메커니즘(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의 이행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 요구됨.

5.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진보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해외 주요 보험회사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억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해외 주요 보험회사의 전략 및 대응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신성장동력 확보의 발판으로 활용하여야 함.

- 기후변화의 발생 여부 및 발생 방향에는 과학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정확한 시기와 규모가 알려져 있지 않아 기후변화는 먼 장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음.

- 세계의 기후는 경험상 1960년대부터 이미 변화를 시작하여 점차 그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일환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사건(extreme weather event)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보험산업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 기후변화는 잠재적 위협임과 동시에 새로운 거대 보험시장 제공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산업은 리스크와 그로 인한 금융·경제적 결과를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기후변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지위에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그로 인한 고객행동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의 기업으로서 기후변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정부나 그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기관과의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도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 1,2,3차 종합대책을 수립, 분야별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2012년 이후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또한 의무감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명박 정부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할 뜻을 이미 밝히고 있으며, 일부 은행들은 이미 지속가능경영과 그린마케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억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른 시일 내에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해외 주요 보험회사들에 비해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므로 해외 주요 보험회사의 전략 및 대응방안을 참고하여 이를 시장 확대 및 마케팅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화된 보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험상품, 예를 들면 운행거리기준 자동차보험상품(pay-as-you-drive insurance products)과 같은 보험상품의 도입이 필요함.

- 사회 및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보험회사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풍력 및 조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와 개발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필요로 하며, 고객기업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녹색경영이 절실한 상황임.
- 탄소배출권의 가격 변동 리스크 및 개발도상국의 청정개발메카니즘(CDM) 프로젝트의 이행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한 때임.
- 그 외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협약 및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박영우,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와 향후 전망」, 『기후변화협약과 도시에너지 문제』, 2005. 4.
- 박종식, 「온실가스 감축, 금융권도 동참하자」, 동아일보, 2007. 8. 24.
- 이윤석, 「기후변화와 금융부문의 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16권 2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 5.
- 임재규,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협약과 도시에너지 문제』, 2005. 4.
- _____, Annual review of natural catastrophes 2003, Munich Re Topics, 2004.
- _____, “In the front line: The insurance industry’s response to climate change”, F&C Investment, 2007. 9.
- _____, “A Changing Climate for Insurance”, ABI, 2004. 6.
- Grace, Elayne, “Climate Change and the Role of Insurance”, Insurance Australia Group.
- Kroner, W., J.A. Stark-Martin, and T. Willemain “Using Advanced Office Technology to Increase Productivity”, Center for Architectural Research and Center for Services Research and Education, Rensselaer University, Troy, NY, 1992.
- _____, Rain-related winter accidents on the increase – survey, Town and Country Assistance, Press Notice, 27 January 2004.
- Mills, Evan “From Risk to Opportunity: 2007 Insurer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eres, 2007. 11.

◆ 기업의 바람직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서성민 연구원

1.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의 중요성과 선정기준 변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한 파생상품 및 주식형 펀드 투자 등 수익률 중심으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칫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마·일 등 선진국들은 수익률 등과 같은 단기 성과지표보다 전문성, 서비스, 컨설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적 평가중심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추세임.

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의 중요성

□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기반 확보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마지막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
- 특히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설계 및 연금계리,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마·일과 달리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간 1대1 계약에 의해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일임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이므로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

□ 기업경영의 부실화 및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전문성 등 제도운용 역량 부족, 수익성 위주 투자 등으로 제도운영이 부실화될 경우, 이는 기업 비용증가로 이어져 경영에 심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업자의 안전성 부족과 불충분한 서비스 등으로 제도의 효율적 이용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즉 퇴직연금제도가 잘못 운영되어 부실화되면 기업경영의 안전성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퇴직연금사업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하는 사용자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도의 보완차원에서도 검토가 요구됨.

테마진단

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의 기준변화

□ 단기수익률 및 수수료 중심의 정량적 평가체계 : 1990년대 이전

-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얼마나 높게 시현되고 있는가, 운용 및 자산 관리관련 수수료는 얼마나 저렴한가 등 과거 성과에 기초한 정량적 평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 왔음.
- 그 이유는 수익률과 수수료기준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비교 평가가 객관적이었기 때문임.
- 이러한 단기적인 수익률 변동과 수수료 수준 차이만을 고려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력과 운용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기업 및 근로자는 점점 인식하게 됨.
-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식이 폭락하고 이로 인한 퇴직연금 수익률 저하는 근로자 및 기업의 소송리스크 증대로 이어져 정량적 평가의 한계가 노출됨.

<표 1>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의 개념 및 기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개념	연금자산의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	운용체제의 질(운용회사의 질 + 운용상품의 질)에 대한 평가
기준	- 수익률 중심 평가 ·벤치마크 비교, 유니버스 비교	- 4P 중심 평가 ·운용철학(Philosophy), 운용인력(People), 운용의사결정의 프로세스(Process), 운용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 운용체제의 질 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체계 : 1990년대 ~ 현재

-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량적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단순히 연금컨설팅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정성적 평가 위주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운용함.

<표 2>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정성적 평 가	- 과거 성과만으로 알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 - 운용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현상을 인식가능	- 자의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우 난해함. - 평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
정량적 평 가	- 객관성이 높으며 알기 쉬움 - 비교하기 쉬우며 다수의 운용상품을 평가할 수 있음.	- 운용실적은 과거치에 불과함. - 단기적인 성과에는 운·불운의 영향도 존재 -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항상변화

- Whilshire Associate 등과 같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회사의 경우 정량적 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단순히 보완하는 평가체제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별첨 I >참조).

- 즉, 단기적 변동성이 매우 큰 수익률 등과 같은 정량적 평가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능력 및 운용체제의 질 등과 같은 정성적 평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2. 마·일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기준과 특징

마·일 등의 선진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분류하고, 이에 기초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와 정보비대칭성의 완화라는 차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가. 미국

- 노동부에서 2006년 Pension Protection Act 제정시, 퇴직연금제도 운용을 책임지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발표
-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수탁자가 수행하여야 할 핵심역할 중 하나로 보고, 제도의 운영을 책임지는 수탁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
 - 회사자체에 대한 정보 : 사업자의 재정상태, 자사와 유사한 크기 또는 복잡성을

테마진단

지닌 타기업에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한 경험 및 결과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 퇴직계정을 관리할 전문가의 경험 및 자격요건, 사업자의 과거 제도 운용 경험 및 성과, 제도관련 피소경험 여부
- 업무처리 : 사업자가 적립금 투자를 할 경우 투자방법, 또는 가입자가 투자 결정을 하는 경우 처리방법, 수수료 체계 등

<표 3> 연금정보사이트의 사업자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전문성	컨설팅(Plan Consulting to Plan Sponsor)
	운영역량(Administrative Capabilities)
	컨설팅 담당자의 지식수준(Knowledge)
자산운용력	다양성(Variety of Investment Options)
	경쟁력 있는 상품(Brand Name Fund)
	투자실적(Investment Performance)
서비스	가입자서비스(Service to Participant)
	시스템/웹사이트(Provider's Web-site)
안전성	신용평가(Credit Ratings)
	회사재무건전성(Financial Strength)
기타	수수료 적정성(Reasonableness of Fees)
	수수료 투명성(Transparency of Fees)
	이미지/평판(Market Image/Reputation)

자료 : Plansponsor.com, 2008

- 이에 따라 대형 컨설팅사 및 연금정보사이트(Plansponsor.com)에서도 기업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A컨설팅사는 전문성, 자산운용력, 서비스, 수수료 등을, B컨설팅사는 전문성, 운용철학, 퍼포먼스, 고객서비스, 안정성을 C컨설팅사는 인적자원, 투자철학, 운용의사결정, 운용/관리, 퍼포먼스 등을 평가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별첨 II>참조)
 - Plansponsor.com에서도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전문성, 자산운용력, 서비스, 안전성, 기타 등을 제시

나. 일본

- 일본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 법령 및 후생노동성 통지(우리나라의 행정지침에 해당)에서 규정
 - 확정급부기업연금법에서는 기업이 작성하는 기본방침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전문적 수준, 서비스 내용, 수수료 등에 대해 평가한 후 선정하도록 규정

<표 4>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준(일본)

관련 규정	세부내용
확정급부기업연금법시행령 제45조·시행규칙 제83조	사업주는 적립금의 운용에 관해서 운용의 목적 이외에 운용수탁기관의 선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기본방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통지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에 관해서는 가입자의 이익 관점에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전문적 수준, 업무·서비스내용(가입자 등으로부터 기업형 퇴직연금의 운영상황에 관한 조치가 있을 때는 성실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을 것 등), 수수료 등에 관하여 복수의 운용관리기관 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선임할 것
	운용관리기관의 선임에 있어서는 운용실적에 대한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운용에 대한 기본적 고려사항, 운용책임자 및 운용담당자의 체제 및 능력, 조사·분석 등 지원체제, 운용상황의 보고, 기타 정보제공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더한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시행령 및 노동성 통지, 2008.

- 이에 따라 일본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기업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에 고려해야 할 사업자 선정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일본 스미토모신탁은행에서는 기업들이 전문성, 자산운용력, 서비스, 안정성, 기타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퇴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표 5>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예: 住友信託銀行)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전문성	전담조직현황	정성
	전문가비율(연금업무경험,년수)	정성
	보유자격	정성
	운용역량(업무 재위탁여부 등)	정성
자산운용력	운용상품의 수, 다양성 - 원금확보형, 실적배당형 별도 비교	정량
	운용상품 선정에 관한 Rule	정성
	모니터링 체계	정량
	수익률	정량
서비스	운영관련 보고 신속성, 정확성	정성
	퇴직연금시스템	정성
	가입자교육 역량 -교육방법, 강사진 역량 등	정성
	콜센터 수준	정성
안전성	대외신용도(신용평가등급 등)	정량
	경영건전성지표(업권별)	정량
기타	수수료	정량
	수탁실적 -평균사이즈, 수탁신장률	정량
	브랜드이미지/브랜드파워	정성

주 : 일본에서는 단기적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객들이 잘 인식하고 있어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를 중시하는 경향임.
자료 : 住友信託銀行 내부자료, 2008.

3. 한국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에도 간접적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관련 규정(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은 일부 존재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별도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관련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적으로 사용자(기업)의 단독 판단과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음.

- ☐ 퇴직연금제도는 일반상품과 달리 여러 이해관계자가 조합되어 운용되는 복합적인 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수탁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이에 퇴직연금 사업자를 비롯한 수탁자에 주의 및 충실의무 등 수탁자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에 요구하고 있음.
-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요건에서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건전성,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일 뿐, 퇴직연금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나타내는 선정기준 또는 지침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일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

<표 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재무건전성 요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자기자본비율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재무건전성 감독 이상이 어야 한다고 규정 - 재무건전성 감독기준(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회사 :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150%이상, 보험회사 : 지급여 력비율 100%이상, 은행 :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증권·영업용 순자본비율 150%이상
인적 요건	운영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적 요건	운영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2006

- 미·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규나 가이드라인으로 퇴직연금사업 선정에 관한 기준이 아직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런 상황하에서 최근 기업들은 합리적인 선정기준 없이 수익편향적으로 퇴직연

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마이일 등 선진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연금상품의 특성에 부합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검토작업이 요구됨.

4.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향후과제

적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특성교육강화, 퇴직연금사업자의 핵심역량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 설정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운용의 특성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 강화
 -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보다 정확하게 퇴직연금제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상 교육강화가 요구됨.
 - 즉,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과 수급권보호가 최우선이며 이에 기초한 운용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금 사업자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철저
 -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기본 역량이 단기적인 운용성과가 아니라 보다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경쟁력에 있음을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통해 재인식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마련함과 더불어 이에 기초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의 차별화를 도모해나가야 할 것임.
-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사용자 스스로 장기상품인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충실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적정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고 은퇴 이후

-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미, 일 등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
-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정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선정에 관한 규정이나 전문성, 자산운용능력, 서비스,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별첨 I> Whilshire Associates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체제

구분	비중배분	점수
인재/조직		
-경영실태 -운용담당자의 평균경험연수 -운용담당자의 정착율 -조직의 적극의욕 -인센티브		
운용철학/프로세스		
-명료한 운용철학 -조사부문의 주력도 -증권매매의 결정근거 -위험관리/포트폴리오 구축능력 -조사능력/부가가치		
경영자원의 투입량		
-운용관리사무 -고객대응의 주력도 -포트폴리오관리/분석능력 -조사능력 -운용보고/컴퓨터능력		
증권매매능력		
-시장영향 감각책 -매매트레이드제의 충실도 -선진적/프로그램/패키지매매		
운용보수		
-운용스타일에 상응한 보수율 -성과보수제의 채용		
운용성과		
-유니버스대비 -운용스타일별 인덱스 대비 -기여분석 -평가기간대비 -금액가중/일관성		
합 계		

<별첨 II> 미국 대형 컨설팅사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항목 및 비중

테마진단

	평가항목(예)		비중
A 컨설팅사	운용철학	투자철학	40
		의사결정 프로세스	
		운용의 일관성	
		리서치 체제	
		매매 집행 체제	
		포트폴리오 특성	
	안정성	자산규모	15
		경영문화 등	
	고객 서비스	관련자료(리포팅) 시의성	15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B 컨설팅사	전문성	전문가 Level	10
		운영경험	
	퍼포먼스	Return · Risk	20
		운용분석 등	
	전문성	전문인력 현황 및 수준	10
		경험의 풍부성	
		업무의 일관성 등	
	자산 운용력	투자철학	30
		펀드라인업(수, 다양성)	
		자산운용컨설팅능력	20
	서비스	투자퍼포먼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10
	수수료	투자교육수준, 시의성	
		기업/근로자 부담수준	10
C 컨설팅사	기타	안전성(Credit Ratings)	10
		브랜드이미지/브랜드파워	10
	인적자원	경험풍부한 인재	2/3
		인사의 일관성	
	투자철학	명확한 투자방침	
		포트폴리오 구축능력	
	운용 의사결정	의사결정조직체제	
		의사결정방식	
	경제, 증권 조사 체제		
	운영/관리	운용업무 체제, 보고	
	퍼포먼스	실적 여부	1/3
		실적관련 보고체계	

경제금융 동향

1. 세계 경제

- 최근 세계경제는 내수와 대외거래가 점차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발되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실물경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 내 회복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임.
-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는 해당 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 문제를 리스크재평가와 대출기준 강화추세로 확대시켰으며 이러한 결과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다시 금융기관의 자산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성됨.

- 2008년 2/4분기 미국경제는 경기부양 노력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일본 및 유로지역은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되는 경기둔화 조짐을 시현함.
- 경기침체가 우려되었던 미국경제는 세금환급 등 경기부양 노력으로 소비와 수출의 견인 속에 오히려 기대치를 소폭 넘어서는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계속되는 주택경기침체와 고용악화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 발발로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향후 경기하강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임.
- 일본 및 유로지역은 실질소득하락으로 인한 소비 감소, 자국통화의 강세 및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였고, 선행지표의 하향추세를 감안해볼 때 단기간 내 성장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내수와 수출의 호조로 두 자리 숫자로 성장했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향후 위안화 절상, 중국정부의 무역수지 흑자 축소 노력 등으로 수출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성장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임.
- 리보금리는 지난해 말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금융기관의 대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상승기조를 보이다가 3월 美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조치로 금융불안이 진정되어 크게 하락하였고, 9월 들어 신용경색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함.

경제금융 동향

- 미국 국채금리(10년만기)는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져 3월 중순 3.31%까지 하락하였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장기국채 수요가 감소하자 6월 중순 4.27%까지 반등하였으며 AIG위기가 발표된 9월 중순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지자 3.55%까지 하락함.
- 한편 3개월 만기 단기금리는 3월이후 Bear Sterns 사태 수습을 위한 유동성확대로 금융불안이 진정되자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하반기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에 6월말 1.73%까지 상승했으나, 9월 신용경색 위기에 따른 유동자산 선호로 급락하기 시작하여 구제금융안 부결 이후 0.33%까지 하락하기도 함.

<표 1> 주요 금리 / 환율 변동 추이

	2007.12	2008.3	2008.6	2008.9
미 연방금리	4.24	2.61	2.00	1.81
미 국채(3개월)	3.07	1.28	1.89	1.15
미 국채(10년)	4.10	3.51	4.10	3.69
리보(3개월)	4.70	2.69	2.78	4.05
원/달러	938.20	991.70	1,043.40	1,187.70
원/100엔	833.33	1,000.20	981.79	1,144.22
엔/달러	112.58	99.15	106.27	103.80
달러/유로	1.4722	1.5781	1.5785	1.4374
위안/달러	7.3041	7.012	6.8617	6.8451

주 : 리보금리는 월말기준, 나머지는 월평균

□ 美달러화는 기준금리가 4월에 2.0%까지 인하되면서 2/4분기 중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시현함.

- 유로화대비 美달러화는 4월 하순 유로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美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횡보하다가 7월말 이후 유로지역 경기 둔화 전망으로 평가절상 되기 시작하여 9월 말 신용경색의 유로지역 영향이 점차 커지자 절상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함.

- 엔화대비 美달러화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으로 3월 99.15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일본경기 둔화 우려 등이 현실화 되면서 평가절상 되었으나, 9월의 신용경색위기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자 다시 평가절하되기 시작함.
- 3/4분기 중 주요국의 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유가의 상승 및 금융불안의 재확산 등으로 2007년 말 대비 9월 현재 20~50%가 하락함.
 - 미국의 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수익성 악화와 경기둔화 우려로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9월 들어 리만브라더스 파산과 연이은 구제금융 조치 부결 등으로 연말에 비해 20% 가까이 급락함.
 - 유로지역과 일본 등 기타 해외 주식시장도 각국의 국내경기둔화에 영향을 받아 미국시장에 동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지역은 20%이상 하락했으며 중화권은 30~50% 하락함.

<표 2> 2008년 주요국 증시지수 변동

	2007.12	2008.6	2008.9		2007.12	2008.6	2008.9
韓 KOSPI	1,897	1,594	1,448 (-23.7)	佛 CAC40	5,614	4,434	4,032 (-28.2)
美 DJIA	13,264	11,350	10,850 (-18.2)	日 Nikkei225	15,307	13,481	11,259 (-26.4)
美 Nasdaq	2,652	2,292	2,091 (-21.1)	中 상해종합	5,261	2,736	2,293 (-56.4)
英 FTSE100	6,456	5,625	4,902 (-24.1)	대만 가권	8,506	7,523	5,719 (-32.8)
獨 DAX30	8,067	6,418	5,831 (-27.7)	홍콩 항셱	27,812	22102	18016 (-35.2)

주 : ()는 연말대비 증가율

1) 미국 경제

- 2/4분기 미국경제는 실업률 상승, 주택투자 감소가 주목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수출, 정부지출의 견조한 상승세가 GDP성장을 견인함.
- 향후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달러 강세로 인해 수출의 감소가 예상되며, 미국발 신용경색은 고용을 비롯한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2/4분기 실질 GDP(연율)는 당초 예상치인 1.9% 보다 0.9%p 증가한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실질 GDP는 2007년 4/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서서히 반등하여 2008년 1/4분기 0.9%, 2/4분기 2.8%를 달성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2/4분기 성장은 경기부양으로¹⁾ 인한 소비 진작과 더불어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재정부지출의 확대와 예상보다 적게 감소된 주택투자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표 3>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연율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0.1	4.8	4.8	-0.2	2.0	0.9	2.8
민간소비	3.9	2.0	2.0	1.0	2.8	0.9	1.2
설비투자	3.4	10.3	8.7	3.4	4.9	2.4	2.5
주택투자	-16.2	-11.5	-20.6	-27.0	-17.9	-25.1	-13.3
수출	0.6	8.8	23.0	4.4	8.4	5.1	12.3
수입	7.7	-3.7	3.0	-2.3	2.2	-0.8	-7.3
정부지출	0.9	3.9	3.8	0.8	2.1	1.9	3.9

자료 : 미상무성,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8.9.26 (Q2 Final)

- 1) 신용경색과 주택경기 부진지속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美의회는 2월7일 소비 진작을 위한 세금환급 및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총 1,68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을 의결함.

- 민간소비는 고용악화, 유가상승세 지속으로 1/4분기 중 0.9%에 그쳤으나, 4월 말부터 시행된 세금환급 및 세액공제로 인해 확대되면서 2/4분기에는 1.2% 증가하여 GDP 성장에 소폭 기여함.
- 민간소비 중 비내구재 소비의 증가세가 현저하며(-0.4%→3.9%), 내구재 소비는 1/4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줄어들었고(-4.3%→-2.8%), 서비스 소비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2.4%→0.7%)됨.
- 비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휘발유·에너지제품 소비 감소세가 전분기에 비해 둔화됨.
- 내구재 소비는 자동차구매 소비 감소가 그 밖의 내구재 소비 증가로 상쇄되었으며, 서비스 소비는 오락 및 주택관련 소비 증가가 의료 및 해외여행 관련 소비 감소로 상쇄됨.
- 2/4분기 총투자는 마이너스 성장한 1/4분기 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11.5%를 기록함으로써 GDP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함.
- 2/4분기 주택투자(-25.1%→-13.3%)는 전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설비투자(2.4%→2.5%)는 소폭 증가한 반면,
- 재고투자는 전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제조업부문의 급격한 감소세가 눈에 띄.
- 2/4분기 대외거래 동향을 보면 수출은 전분기 대비 12.3% 증가하였고 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7.3%를 기록하여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함.
- 수출은 전 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석유제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자동차관련 제품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2/4분기 정부지출은 전분기 대비 3.9% 증가하였는데, 연방정부 지출보다는 卅정부 지출의 증가가 눈에 띄(-0.3%→2.5%).
- 한편, 美산업생산활동을 보면 제조업부문은 연초부터 8월 현재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비제조업부문은 상반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8월 들어 호조세를 보임.
- ISM제조업지수(PMI)는 2008년 2월에 국지적 최저점(48.3)을 통과했으나 뚜렷한

경제금융 동향

반등 없이 8월 현재까지(49.9) 축소국면을 벗어나지 못함.

- 8월 현재 업종별 생산을 보면 컴퓨터,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이 호조를 보였고, 운송장비, 기계류, 1차금속 등이 부진함.

- o ISM 非제조업지수(NMI)는 연초에 44.6으로 크게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어 8월 들어서는 50.6로 높아지면서 호조세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저점을 기록한 6월 이후 소폭 반등하고 있으나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징후는 보이지 않음.

- o 주택경기의 침체 심화, 유가상승 등으로 2007년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6월 51.0을 기록하여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7월 51.9, 8월 56.9를 기록하면서 점차 반등하고 있음.

- o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는 6월 56.4로 1980년대 이후 최저점을 통과하면서 7월 61.2, 8월 73.1의 반등을 시험하고 있으나 작년의 90.4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음.

□ 미국의 고용상황은 2008년 상반기 내내 저조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6월 이후 더욱 가속화됨.

- o 2008년 6월(5.5%) 이후 급속히 증가한 실업률은 8월 들어 6.1%에 도달하였는데, 8월 현재 940만 명이 실업상태이며, 전년동월 대비로는 220만 명이 증가함.

- o 8월 중 건설업 실업률이 전년동월 대비 2.9%p 증가한 8.2%에 이르러 최근의 주택부문건설시장의 악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내구재부문 실업률도 2.6%p 증가한 6.6%에 이르렀으며, 전문직부문 역시 2.0%p 증가한 6.0%에 도달함.

- o 8월 중 시간당 평균임금은 18.05달러로서 전년동월 대비 불과 7센트 인상되었는데 향후 임금인상에 대한 압력은 미약할 것으로 보임.

· 대규모 금융권 구제금융 실패의 핵심변수로 주택가격이 고려되는데 주택가격은 7월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구제금융 방안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

· 美연방주택기업감독청의 7월 주택구매가격지수(House Price Index)는 전년동기 대비 5.3%p 하락하여 전월대비 0.6%p 하락한 2005년 10월 수준으로 회귀함.

- 연초대비 8월 현재 소비자물가는 5.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4.1%를 기록한 작년 8월보다 1.0%p 증가한 것이고, 7월에 비해서는 0.1%p 감소한 수치임.
- 에너지 및 식료품가격 상승으로 작년 9월 이후 오름세가 뚜렷했던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는 유가가 안정되면서 8월 들어 감소 추세로 전환됨.
 -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8월 현재 2.5%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2.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치임.
- 전월대비 생산자물가는 6월의 1.8%를 국지적 정점으로 7월 1.2%, 8월 -0.9%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9.6% 증가
 - 에너지가격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써 7월에 3.1% 증가하였던 에너지물가가 8월 들어 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유로지역 경제

- 유로지역 경제는 2007년 경제와는 상반되게 내수와 수출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됨에 따라 2/4분기 중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2% 하락함.
-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유로화 강세로 인해 향후 수출 감소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선행지표들이 연초부터 하락세를 시현해 옴에 따라 유로지역의 경제는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유로지역의 1/4분기 실질 GDP는 수출 호조와 투자심리 회복으로 전분기 대비 0.7% 증가한 반면, 2/4분기에는 민간소비 감소, 수출 감소, 투자 감소의 3중고 속에 전분기 대비 0.2% 하락함.
- 2/4분기 실질 GDP 하락은 고유가 및 유로화강세로 인한 수출의 둔화와 수요부문에 별 투자의욕의 상실이 가장 큰 원인임.
-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에 비해 -0.2% 감소하였고, 투자는 -1.2% 감소하였으며, 정부지출은 0.5% 증가됨.

- 2/4분기 수출은 전분기 대비 -0.4% 감소하였고, 수입도 -0.4% 감소하였는데 수출과 수입이 동일 비율로 감소함으로써 실질 GDP에 대한 영향은 서로 상쇄됨.

<표 4>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0.7	0.5	0.6	0.4	2.6	0.7	-0.2
민간소비	0.0	0.7	0.4	0.2	1.6	0.0	-0.2
투자	1.0	0.1	0.9	1.1	4.3	1.5	-1.2
수출	0.6	1.3	1.8	0.4	6.1	1.8	-0.4
수입	1.3	0.8	2.2	-0.4	5.5	1.9	-0.4
정부지출	1.1	0.2	0.5	0.3	2.4	0.3	0.5

주 : 유로 15개 회원국(EA15) 대상

자료 : Eurostat, EU economic data pocketbook, 2008.9.18

<표 5> 주요 국가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독일 GDP	0.4	0.4	0.6	0.3	2.5	0.3	-0.5
민간소비	-2.1	0.7	0.3	-0.2	-0.4	-0.4	-0.7
투자	0.3	-0.8	1.1	2.0	4.3	3.4	-1.9
수출	-1.3	1.4	1.7	1.3	7.5	2.1	-0.2
프랑스 GDP	0.6	0.6	0.7	0.4	2.2	0.4	-0.3
민간소비	0.7	0.8	0.8	0.5	2.4	-0.1	0.1
투자	1.2	0.7	0.9	1.0	4.9	0.7	-1.5
수출	0.8	1.7	0.5	0.3	3.1	2.4	-2.0
이탈리아 GDP	0.3	0.1	0.1	-0.4	1.5	0.5	-0.3
민간소비	1.0	0.2	0.2	-0.4	1.5	0.0	-0.3
투자	-0.3	-0.4	-0.1	0.6	1.2	0.0	-0.2
수출	1.4	-1.4	2.2	-1.5	5.0	1.3	-0.7
영국 GDP	0.8	0.9	0.6	0.6	3.1	0.3	0.0
민간소비	0.7	0.7	0.9	0.4	3.2	1.1	0.0
투자	1.4	-1.9	2.7	2.2	6.0	-1.5	-5.3
수출	-0.7	1.0	1.3	-1.3	-5.1	0.6	-0.5

자료 : Eurostat, EU economic data pocketbook, 2008.9.18

- 국가별로는 주요 4개국 모두의 2/4분기 투자와 민간소비가 1/4분기에 비해 악화되어 유로경제의 하향세에 일조함.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4개국 모두 투자가 1/4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되고 민간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2/4분기 실질 GDP는 각각 -0.5%, 0.0%, -0.3%, -0.3%를 기록함.
- 한편,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5월 들어 급격히 악화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유지함.
 - 산업부문별로 보면 중간재와 자본재는 5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내구재와 비내구재는 7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
 - 특히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건설업이 전분기에 비해 2.2% 감소하였고, 유가인상에 영향을 받은 에너지 관련 산업이 0.8% 감소한 반면, 금융서비스업은 0.7% 증가함.
- 유로지역 실업률은 2008년 1/4분기에는 유로출범이후 최저점인 7.2%를 기록한 이후 7월 들어 소폭 상승함.
 - 2008년 7월 실업자 수는 1,137만2천명으로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7.3%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식료품가격 상승으로 2008년 상반기 중 유로지역 평균 3.5% 상승하였고, 6월에는 유로출범이후 처음으로 4%대를 기록했으나 유가가 안정되면서 8월 들어 소폭 감소하여 3.8%를 기록함.
 -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8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1.9%p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동월(1.9%p)과 동일한 수치임.

· 8월 현재 유로지역 주요국의 선행지표를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9개월 연속 하향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난 1년 동안 하향추세를 시현하여 향후 유로지역 경기가 계속 하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3) 일본 경제

- 2/4분기 일본경제는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 전반의 모든 활동이 위축되는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이라는 어려운 국면에 처함.
- 7월 선행지수가 4.2% 하락한 가운데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한 실질 GDP는 하반기에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02년 이후 일본경제는 완만한 경기확장세를 유지해왔으나 2007년 말 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여 2008년 2/4분기 들어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경기 둔화세가 뚜렷함.
- 2007년 3/4분기부터 정체를 보이던 실질 GDP는 2008년 2/4분기에 -0.7%의 감소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8월 말 일본정부는 경기부양대책²⁾을 발표함.
 -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의 여파로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5% 감소하였고,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수익 저하로 주택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3.5%, 0.5% 감소하는 가운데, 성장의 동력이었던 수출도 세계경제 둔화에 영향을 받아 2.5% 감소함.

<표 6>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1.0	-0.3	0.2	0.6	2.1	0.7	-0.7
민간소비	0.6	0.3	-0.0	0.4	1.5	0.7	-0.5
설비투자	0.3	-1.9	0.4	1.0	2.1	-0.1	-0.5
주택투자	-1.8	-4.3	-7.3	-9.8	-9.5	4.3	-3.5
수출	2.8	2.0	2.6	2.6	8.6	3.4	-2.5
수입	0.5	1.2	-0.3	0.8	1.8	1.2	-2.6
정부지출	0.3	0.2	0.1	0.9	0.9	-0.5	-0.0

자료 : 내각부, 2008.9.12(2/4분기 2차 속보치)

2) 8.30일 일본정부는 소득세 인하, 연료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한 정부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11조 5,000억 엔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함.

- 2008년 들어서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오던 산업생산은 2/4분기 들어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 광공업생산은 1/4분기 0.7% 하락하였고 2/4분기에도 0.7% 하락하였으나 7월에는 승용차, 식료품, 정밀기계 위주로 생산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3% 반등함.
 - 출하 역시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0.5%, 0.9% 감소하였으나 7월 들어 수송기계, 전기기계 중심으로 1.9% 반등함.
- 고용상황은 연초에 비해 악화되어 2/4분기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실질임금도 연초에 비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9월 이후 소폭이지만 하향추세였던 실업률은 2008년 1/4분기에 3.8%대를 유지하다가 2/4분기에는 4.0%대로 상승
 - 2008년 1/4분기 이후 실질임금은 하향세로 전환되어 6월 현재 2.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급상승한 올해 초 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4%p 증가하였고, 국내기업물가는 작년 말 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4분기에 4.9%p 증가함.
 - 소비자물가는 7~8월에 들어와 상승폭(2.1%p)이 더욱 커졌는데, 이는 소비세율이 인상되었던 1997년을 제외하고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근원소비자물가는 0.1%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제품은 28.4%p 증가하여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2차 전가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기업물가는 2/4분기 이후 상승속도가 높아져서 7~8월(7.6%p)부터는 급등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국내기업물가는 철강, 석유제품위주로 인상되었는데 8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9.9%p, 42.9%p 상승함.

4) 중국 경제

- 2/4분기 중국경제는 선진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세를 시현하였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소비 증가의 확대, 수출 및 고정투자의 높은 신장세에 기인함.
-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높아진 소비자물가 상승은 7월 들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었으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생산자물가의 급격한 상승세로 향후 중국의 물가안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2006년과 2007년 11%대 증가율을 기록한 중국의 실질 GDP는 2008년에도 상승추세를 이어가 1/4분기에 10.6%, 2/4분기에 10.1%가 성장하는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유지함.
- 2/4분기에는 고정투자, 소매판매,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함.
 - 특히 2/4분기의 고정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6.8%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부동산업의 고정투자가 30%대로 성장하였고, 환경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도 20%대 후반의 성장을 기록함.

<표 7>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11.7	12.6	11.5	11.3	11.9	10.6	10.1
고정투자	25.3	26.7	26.4	25.8	25.8	25.9	26.8
소매판매	14.9	15.8	16.8	19.0	16.8	20.6	22.2
수출	27.9	27.4	26.2	22.2	25.7	21.4	22.4
수입	18.2	18.2	20.7	25.4	20.8	28.6	32.6
산업생산	18.3	18.3	18.1	17.5	18.5	16.4	15.9
소비자물가	2.7	3.6	6.1	6.6	4.8	8.0	7.9
생산자물가	2.7	2.7	2.6	4.4	3.1	6.9	8.4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Sept. 200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수출은 위안화 절상의 가속화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20%대를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입도 최근의 원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4분기 32.6%를 기록함.
- 산업생산은 수출 및 내수의 호조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1/4분기의 16.4% 증가에 연이어 2/4분기에도 15.9% 증가함
- 중공업과 경공업 모두 5월 현재까지 10% 중반의 꾸준한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시현함.
- 소비자물가는 농산물의 공급부족이 점차 해소되면서 5월부터 감소되기 시작한 반면, 생산자물가는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어 1/4분기에는 6%대, 2/4분기에는 8%대, 7월에는 10%로 상승함.
-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7.9%를 기록하여 1/4분기 8.0%보다 다소 하락하였고, 5월(7.7%)부터는 유통 측면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확대되어 7월에는 6.3%까지 하락함으로써 작년 3/4분기 수준으로 회복됨.
- 반면, 2/4분기 생산자물가는 8.4%를 기록하여 1/4분기의 6.9%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6월에 8.8%, 7월에 10.0%까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국내 경제

2008년 2/4분기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의 부진으로 인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무역수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3/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됨.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08년도 2/4분기 실질 GDP는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계속되는 내수부문의 침체로 인하여 1/4분기 보다 1%p 낮은 4.8% 성장에 그침.
- 금융부문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확대되어 국내수요의 증가율이 1.9%로 계속 둔화됨.
 - 대외부문에서는 재화수출이 재화수입 증가율을 계속 초월하고 있으며, 2/4분기에는 그 격차가 확대되면서 재화수출이 GDP 성장을 견인함.
 -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확산으로 향후 세계경제는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국내경제의 성장둔화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조짐은 7-8월 중 경기종합지수에서도 일부 관찰되고 있음(<그림 1> 참조).

<표 1> 실질 GDP와 수요부문별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CY 2007					CY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4.0 (1.0)	4.9 (1.7)	5.1 (1.5)	5.7 (1.6)	5.0	5.8 (0.8)	4.8 (0.8)
- 민간소비	4.1	4.4	4.8	4.6	4.5	3.4	2.3
- 설비투자	10.9	11.0	2.3	6.5	7.6	1.4	0.7
- 건설투자	3.7	1.6	-0.1	0.4	1.2	-1.1	-1.2
- 재화수출	10.5	10.3	9.0	17.7	12.0	12.0	12.5
- 재화수입	9.6	10.9	5.1	17.6	10.9	11.1	9.2
국내수요	5.3 (1.5)	5.1 (0.8)	3.6 (0.6)	4.1 (1.2)	4.5	2.7 (-0.1)	1.9 (0.2)

주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 2/4분기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준내구재 소비의 감소, 저조한 비내구재 소비 등으로 인하여 GDP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로 둔화됨.
-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는 7.6%의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의복 및 신발 등의 준내구재는 1.6% 감소, 비내구재는 1%대의 낮은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2/4분기 중 소비재 판매는 2.5%의 증가에 그침으로써 2007년 3/4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둔화함.
 - 7~8월 중 소비재판매는 준내구재의 증가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내구재의 대폭적인 감소세 전환과 비내구재의 소비 저조로 2%대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이러한 7~8월 중 소비재판매 동향과 최근의 경기침체 조짐 등을 고려할 때 소비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소비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CY2007					CY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재판매	5.7	4.2	7.1	4.5	5.3	3.9	2.5	3.9	1.5
- 내구재	15.7	12.2	10.1	6.9	11.0	8.2	7.6	7.2	-3.9
* 승용차	10.2	9.5	4.1	3.9	6.8	9.5	7.1	5.7	-13.1
- 준내구재	3.6	2.2	3.2	2.9	2.9	5.4	-1.6	3.9	9.5
- 비내구재	2.3	1.7	7.1	4.0	3.7	1.5	1.6	2.0	1.6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설비투자는 2/4분기 중 기계류의 감소세, 운수장비의 대폭적인 둔화세 등으로 0.7%로 1/4분기 1.4%의 절반수준이며,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1/4분기에 이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도 지난해 2/4의 높은 증가세에 대한 기술적 영향도 있지만 대폭적으로 둔화됨.
 -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액의 7~8월 평균 증가율(9.9%)을 감안할 때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경제금융 동향

- 2/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토목건설 모두에서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1.2%가 감소하여 1/4분기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됨.
- 건물건설은 주거용의 부진으로 감소세가 확대되어 1.8%가 감소되었고, 토목건설도 도시토목, 철도시설 등의 부진으로 0.5%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1/4분기보다는 감소세의 폭이 축소됨.
 -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는 2/4분기에 -6.1%로 1/4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7~8월 중에는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향후 3/4분기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표 3> 투자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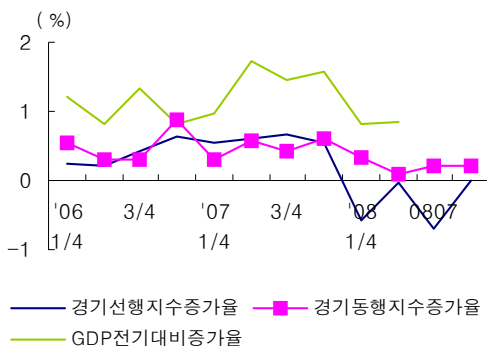
	CY2007					CY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설비투자	10.9	11.0	2.3	6.5	7.6	1.4	0.7	-	-
- 기계류	13.5	9.5	1.0	7.0	7.6	-0.9	-0.1	-	-
- 운수장비	0.3	18.9	8.9	4.0	7.7	12.3	4.4	-	-
* 기계수주	18.9	7.1	19.1	39.3	21.0	25.2	8.8	20.7	-1.7
건설투자	3.7	1.6	-0.1	0.4	1.2	-1.1	-1.2	-	-
- 건물건설	2.0	1.2	1.8	2.2	1.8	-0.3	-1.8	-	-
- 토목건설	7.2	2.1	-2.9	-1.8	0.3	-2.5	-0.5	-	-
* 건설수주	26.3	26.3	-5.6	29.5	19.3	-3.9	-6.1	-13.0	-7.6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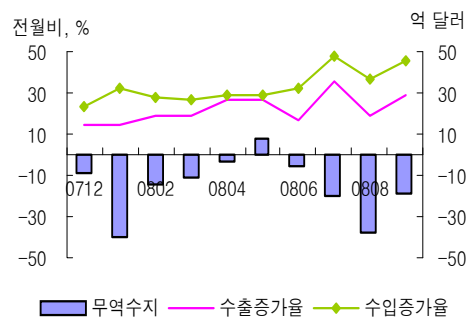
- 2/4분기 무역수지(통관기준)는 전년동기대비 23.2%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이 30.1%나 증가하여 0.2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며, 3/4분기 중에는 수출은 27.6%, 수입은 43.2% 증가하여 적자폭이 77.3억 달러로 대폭 확대됨.
- 품목별 수출은 컴퓨터, 자동차 등의 2/4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인 반면, 2/4분기 중에는 석유제품(101.7%), 철강제품(33.7%), 무선통신기기(30.7%) 등의 호조를 보였고, 3/4분기³⁾에는 선박(149.2%), 석유제품(103.7%), 철강제품(58.1%)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품목별 수출은 컴퓨터, 자동차 등의 2/4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인 반면, 2/4분기에는 석유제품(101.7%), 철강제품(33.7%), 무선통신기기(30.7%) 등이 호조세를 보였고, 3/4분기⁴⁾에는 선박(149.2%), 석유제품(103.7%), 철강제품(58.1%)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국가별 수출은 미국(2/4분기 5.6%→3/4분기 4.6%) , EU(6.2%→10.0%), 일본(17.1%→12.5%)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 중남미(42.6%→49.2%), ASEAN(38.6%→46.6%), 중동(37.6%→42.9%)은 호조, 중국(33.7%→20.6%)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 수입은 원유가 2/4분기에 63.3%, 3/4분기에는 77.4%로 높은 증가세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소비재(18.7%→11.6%)나 자본재(14.1%→14.6%)는 10%대의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가별 수입은 유가의 상승으로 중동(66.5%→106.1%)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ASEAN(30.8%→40.8%), 중국(32.0%→38.0%) 등은 견조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미국(6.6%→12.7%), EU(18.7%→16.2%), 중남미(14.6%→24.7%), 일본(15.0%→20.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1> GDP와 경기지수 추이



<그림 2> 대외 거래 지표 추이



3) 지식경제부 잠정치로 7월1일에서 9월20일까지 기준임.

4) 지식경제부 잠정치로 7월1일에서 9월20일까지 기준임.

경제금융 동향

- 산업생산활동 상황은 2/4분기 중 광공업에서는 경공업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ICT 산업의 대폭적인 증가로 8.6%의 견조한 증가세를 실현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낮은 증가율의 실현으로 4.6%로 둔화되었고, 특히 8월 중에는 광공업 및 서비스 모두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됨.
- 제조업 생산에서는 2/4분기에 경공업이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한 반면, ICT는 28.9%, 중공업은 1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7월 중에도 중공업과 ICT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경공업이 4.0%의 증가세를 실현함으로써 제조업 생산이 8.7%를 기록함.
 - 그러나 8월에 들어서서는 경공업의 -4.7% 감소세 전환과 더불어 중공업과 ICT에서도 각각 3.4%와 7.4%로 생산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제조업 전체의 생산이 1.9% 증가에 그침.
 - 서비스업생산에서는 2/4분기 중 금융보험 10.0%, 운수통신 6.9% 등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외의 서비스업종에서 증가세의 둔화를 보였고, 7~8월 중에도 부동산사업서비스의 감소세, 기타 업종에서도 증가세의 지속적 둔화로 서비스업 전체도 생산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임.

<표 4>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CY2007					CY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광공업	4.0	6.2	5.9	10.8	6.8	10.6	8.6	8.6	1.9
- 제조업	4.1	6.3	6.2	11.2	7.0	10.7	9.0	8.7	1.9
·중공업	4.6	7.0	8.0	12.6	8.2	12.9	11.1	9.6	3.4
·경공업	1.6	3.0	-1.5	4.2	1.7	1.5	-0.7	4.0	-4.7
·ICT	2.0	7.3	18.6	25.2	13.7	-0.7	28.9	17.8	7.4
서비스업	5.4	6.1	7.2	6.8	6.4	6.4	4.6	3.9	1.6
- 도소매음식숙박	3.7	3.4	3.7	4.6	3.9	3.7	2.3	3.1	2.8
- 운수통신	5.4	4.6	6.3	7.5	5.9	6.7	6.9	5.5	0.6
- 금융보험	9.5	16.3	18.3	19.5	16.0	15.3	10.0	9.3	7.0
- 부동산사업서비스	5.9	4.8	6.9	3.1	5.1	5.3	3.3	-1.3	-7.9
- 기타서비스	4.4	4.3	4.7	3.5	4.2	4.0	3.0	1.5	1.5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소비자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실질소득의 감소, 고용불안 등이 심화되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경직되고 있어 향후 내수위축은 심화될 전망이다.

- 소비자 물가는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의 상승세 가속으로 전년동기대비로 2/4분기에 4.8%, 3/4분기에는 5.5%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추세임.
- 채소, 과일 등의 가격하락으로 농산물은 2/4분기에 -3.9%, 3/4분기에는 -4.9%로 감소세가 가속되고 있음.
- 이에 반해 공업제품은 밀가루 등 가공식품, 석유류의 상승으로 같은 기간 중 8.6%에서 10.2%로 가속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도 외식을 중심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같은 기간 중 4.4%에서 5.2%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
- 경기 및 소비지출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4분기 평균 102.9에서 2/4분기에 93.1로 하락하였고, 7~8월 중에는 87.9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임.
- 고용사정은 국내경기의 둔화를 반영하여 총취업자 증가율이 2/4분기에 0.7%로 낮아지고 7~8월 중에는 더욱 낮아져 전반적으로 불안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청년취업자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7~8월중에는 감소세가 더욱 커지고 있어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2/4분부터 실업률의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율⁵⁾도 낮아지고 있어 경제활동인구 중 일정부분이 취업준비, 구직단념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참가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을 비롯하여 가사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업, 통신업, 운수업 등에서도 2/4분기 이후 계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5) 고용율은 실업률과는 달리 구직단념이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기인하는 과소추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실업률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5> 고용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CY2007					CY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	1.2	1.2	1.3	1.2	1.2	0.9	0.7	0.6	0.7
- 청년취업자	-2.1	-1.6	-1.5	-1.2	-1.6	-2.5	-2.1	-3.2	-2.8
고용율	58.6	60.6	60.2	60.0	59.8	58.5	60.4	60.3	59.6
실업율	3.6	3.2	3.1	3.0	3.2	3.4	3.1	3.1	3.1
농림어업	-2.8	-2.7	-3.7	-3.8	-3.3	-4.3	-2.7	-2.3	-1.9
광공업	-1.2	-1.3	-1.2	-0.9	-1.1	-0.6	-0.5	-0.5	-0.6
- 제조업	-1.2	-1.3	-1.2	-0.9	-1.1	-0.6	-0.6	-0.7	-0.8
SOC	3.6	2.2	-0.2	-0.2	1.3	-0.9	-1.3	-1.0	-0.7
- 건설업	2.7	1.6	-0.3	-0.5	0.8	-1.0	-2.0	-1.4	-1.5
서비스업	1.9	2.3	2.7	2.5	2.4	2.0	1.8	1.5	1.5
- 도소매음식숙박	-1.0	-1.1	-0.2	-0.3	-0.6	-0.6	-0.7	-0.8	-0.9

주 :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율은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로 정의 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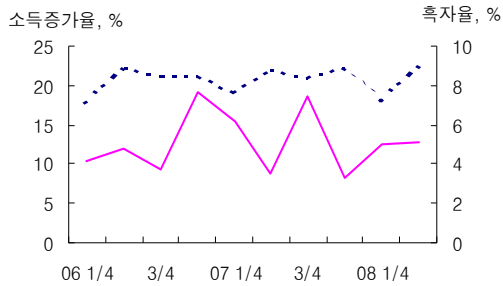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08년도 2/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년 동기대비로 1/4분기와 동일하게 5.1%상승하였고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0.4%로 1/4 분기 1.2%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4.6% 상승하였으나 이는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2% 감소함.
- 소득증가율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가까운 미래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 이에 대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인 저축(흑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7.7%p 상승한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전기대비 4.3%p 감소하였고, 또한 전년 동기대비 0.5%p 하락함.

<그림 3> 도시가게 소득, 흑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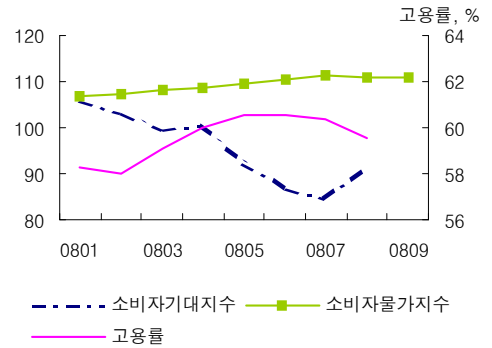


..... 흑자율 — 소득증가율

주 : 흑자율 = 1 - 평균소비성향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그림 4>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 소비자자기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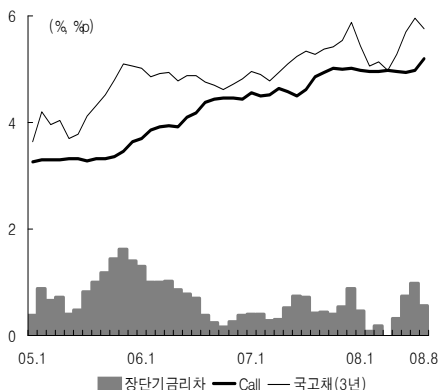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 「고용동향」, 「소비자물가동향」

3. 금융경제

2008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국고채 금리는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5월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7월 중 연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수익률 상승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의 영향으로 다시 소폭 하락하여 9월 말 현재 5% 후반 대에서 등락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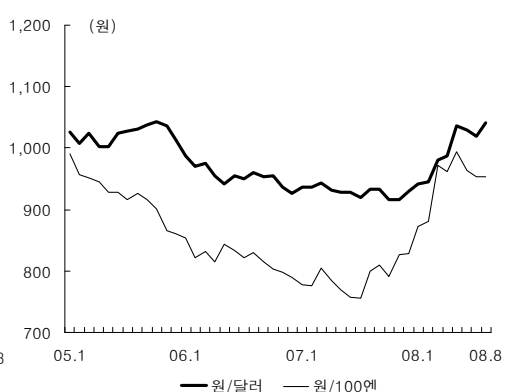
- 국고채 금리는 연초 5.86%를 기록한 이후 4월 말 4.88%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여 7월에 6.17%로 금년 중 최고치를 경신한 후 9월25일 현재 5.93%를 기록하고 있음.
- 2008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국고채 금리는 5월 이후 정책 당국의 단기외채 규제를 위한 외화차입 규제방안 검토 및 통화긴축에 대한 경계감 확산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 중 한때 6%를 초과하기도 하였으나, 수익률 상승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하여 최근 6%를 소폭 하회하고 있음.

<그림 1>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2> 원화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 정책 당국이 8월7일 기준금리를 5.25%로 0.25% 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9월25일

현재 콜 금리는 5.23%를 기록 중임.

- 8월 중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고채 금리는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환율 등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5.7 ~ 6.0%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회사채 금리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경색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뿐만 아니라 원화 유동성까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 회사채 금리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9월25일 현재 회사채(3년 만기, 우량물) 금리는 7.66%까지 상승하여 국고채와의 금리 격차가 금년 중 최대치인 1.73% 포인트를 기록함.

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발생한 투자은행, 보험회사 등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구제금융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달러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절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9월24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54.5를 기록하여 2008년 초 대비 23.2% 절하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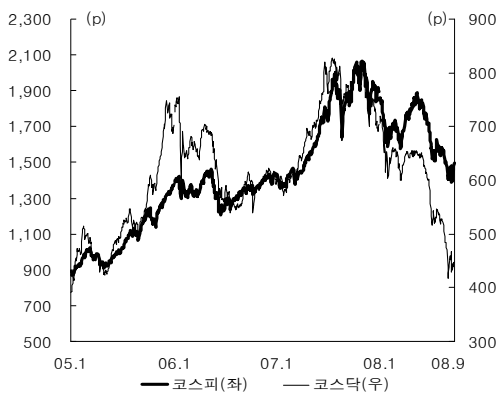
-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의 국고채 일시 청산 가능성, 외환보유고의 단기 유동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08년 9월중 한국이 금융위기 또는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상기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9월15일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Merrill Lynch가 BoA에 인수되고 Lehman Brothers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함.
-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유동성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미국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현재 달러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외국투자자들이 신흥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달러 유동화 정도가 높아 자금이탈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엔/달러 환율은 9월24일 현재 106.12를 기록하여 연초 대비 4.9% 절상된 상태이므로 최근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는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더욱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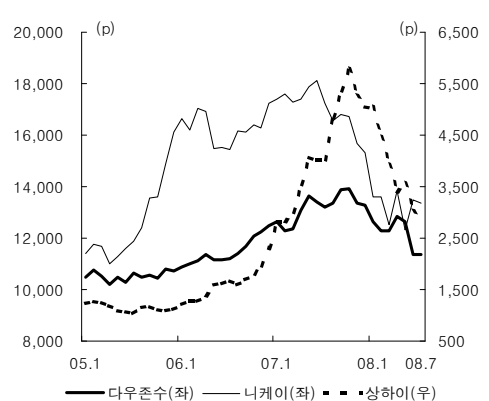
-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가 일부 청산되고 미국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일본 엔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조치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해소 기대 및 엔 캐리 트레이드 재개 가능성 등이 엔화의 지나친 절상을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3> 국내 주가지수 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

<그림 4> 해외 주가지수 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

□ 2007년 이후 지속되어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8년 9월 미국 대형 투자은행 및 보험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의 동반 침체를 초래하여 주가를 폭락시키는 등 금융시장 경색을 유발함.

-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9월24일 현재 10,825.17을 기록하여 연초 대비 17.0%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일본 니케이지수 및 중국 상하이지도 각각 20.8%와 58.0%의 하락률을 기록함.

- 미국의 구제금융 계획 발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소폭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 각국의 주가지수를 상승세로 돌려세우기에는 힘에 부치는 듯함.

○ 미국 증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한국 증시의 경우 9월24일 현재 코스피지수는 1,495.98을 기록하여 연초 대비 19.3% 하락하였으며 코스닥지수는 448.80을 기록하여 36.5%의 하락률을 보임.

-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생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구제금융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으나 침체상태에 빠진 증시를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
- 금융기관이 집중된 미국 증시의 회복이 세계 증시 회생의 출발점이라는 점과 미국 경기회복에 최소 1~2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한국 증시가 단기간 내에 활황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2008년 2/4분기 은행권, 증권사, 보험사는 전분기대비 순수신 증가를 기록한 반면 투신권은 전분기에 비해 순수신이 감소하였음.

○ 2008년 4월 중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은행의 예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순수신이 전월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결과 2/4분기 은행 순예금수신은 전분기대비 3.6배 가량 증가함.

- 예금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4분기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순발행액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실세총예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은행의 일반계정 순수신은 1/4분기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남.
- 반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해외증권을 직접 매매할 수 있게 되면서 금전신탁을 통해 해외증권 등으로 위탁 운용하던 은행권의 거액자금을 인출함에 따라 은행의 신탁계정은 마이너스 순수신을 기록함.

○ 2008년 2/4분기 주가지수가 전분기대비 상대적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투신권의 채권형 펀드는 마이너스 순수신을 기록하였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이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저해함에 따라 혼합형 및 주식형 펀드 순수신액 역시 전분기대비 감소함.

- 다만 시중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경제금융 동향

목표로 하는 MMF는 순수신 규모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증금사는 2/4분기 순어음매출액과 순어음할인액이 전분기대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순수신 규모가 24.3% 증가함.
- o 증권사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의 영향으로 고객예탁금이 마이너스 순수신을 기록하였으나 일종의 증시 대기자금 성격을 가진 환매조건부 채권이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총 순수신 규모는 1/4분기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함.
- o FY2008 1/4분기(CY2008 2/4분기) 생명보험은 퇴직보험이 마이너스 순수신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의 증가 및 지급보험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순수신이 전분기에 비해 22.5% 증가하였고 손해보험도 지급보험금 감소 및 보험가입 금액 증가 등으로 순수신이 30.3% 증가하여 전체 보험시장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4.4% 증가함.

<표 1>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6		CY2007				CY2008	
	3/4	4/4	1/4	2/4	3/4	4/4	1/4	2/4
보 험	89,600	115,113	95,422	106,338	93,397	108,974	85,391	106,256
- 생 보	69,914	94,257	74,700	83,189	70,215	84,269	64,517	79,050
- 손 보	19,686	20,856	20,722	23,149	23,182	24,705	20,874	27,206
은 행	128,483	181,165	33,002	101,574	8,442	204,778	214,006	235,332
- 일 반	82,785	165,339	-2,513	114,075	-42,781	187,062	142,969	291,219
- 신 탁	45,698	15,826	35,515	-12,501	51,223	17,716	71,037	-55,887
증 권	48,065	13,445	29,858	85,722	37,556	-13,605	6,184	47,423
투 신	25,649	97,260	73,030	163,893	112,258	269,007	377,948	239,132
총 금	53,010	10,350	60,303	79,432	37,691	14,457	34,881	43,348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8 1/4분기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지난 분기에 이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성장세 둔화가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8 1/4분기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5% 성장한 27조 2,390억원으로 나타나 전분기에 이어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음.

- 특히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주식시장 침체와 경기불황으로 변액보험의 성장률도 위축되는 등 전년동기대비 5.0% 성장에 머물러 성장률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 그러나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성장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의 성장세 유지와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성장을 유지하였음.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연도 종목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184,684	750,956	182,840
	6.8	8.1	10.8	13.3	19.7	7.7	13.0	5.0
손해보험	76,309	295,829	79,300	81,659	92,201	86,658	339,818	89,550
	18.3	15.0	14.5	12.9	18.3	13.6	14.9	12.9
합 계	247,856	960,378	253,485	258,072	307,876	271,342	1,090,774	272,390
	10.1	10.1	12.0	13.2	19.2	9.5	13.6	7.5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시장 동향

나. 총자산

FY2008년 1/4분기말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생명보험의 총자산 증가율 하락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1.6% 증가에 그쳐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 FY2008 1/4분기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수입보험료 성장세의 둔화와 투자수지 악화로 인해 전분기대비 1.6% 증가한 377조 3,712억원에 머물러 FY2004 4/4분기 1.0% 증가율 이후 가장 낮은 분기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성장을 하락과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수지의 악화, 주식시장 침체와 통화 파생상품의 평가손실로 인한 투자영업수지의 악화로 총자산이 전분기대비 1.3% 증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됨.
 -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 유지로 인한 운용자산 증가 및 투자영업수지의 개선으로 3.1% 성장하여 분기별 평균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기간말 억원, %)

연도 종목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2,731,316	2,731,316	2,827,189	2,914,098	2,973,394	3,053,998	3,053,998		3,093,354
	2.8	14.1	3.5	3.1	2.0	2.7	11.8		1.3
손해보험	569,713	569,713	595,159	613,256	638,392	660,151	660,151		680,358
	2.5	15.6	4.5	3.0	4.1	3.4	15.9		3.1
합계	3,301,029	3,301,029	3,422,348	3,527,354	3,611,786	3,714,149	3,714,149		3,773,712
	2.7	14.4	3.7	3.1	2.4	2.8	12.5		1.6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8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한 18조 2,840억 원으로 두 분기 연속 한 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부진한 양상을 보임.
 - 개인보험의 경우 증시침체와 민간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종목에서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5.9%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단체보험의 경우 신규가입이 중단된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3.0% 감소하며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퇴직연금이 21.5%나 감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적으로 수입보험료가 8.2% 감소하였음.
- FY2008 1/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지금까지 총자산 규모의 성장을 이끌었던 특별계정 자산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분기대비 1.3% 성장한 309조 3,354억원을 기록 함.
 - 특히 FY2007 4/4분기 33.3% 증가했던 특별계정자산은 FY2008 1/4분기 주식시 장 침체로 인한 변액보험 성장둔화로 인해 25.0%성장에 그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184,684	750,956	182,840
	6.8	8.1	10.8	13.3	19.7	7.7	13.0	5.0
총 자 산	2,731,316	2,731,316	2,827,189	2,914,098	2,973,394	3,053,998	3,053,998	3,093,354
	2.8	14.1	3.5	3.1	2.0	2.7	11.8	1.3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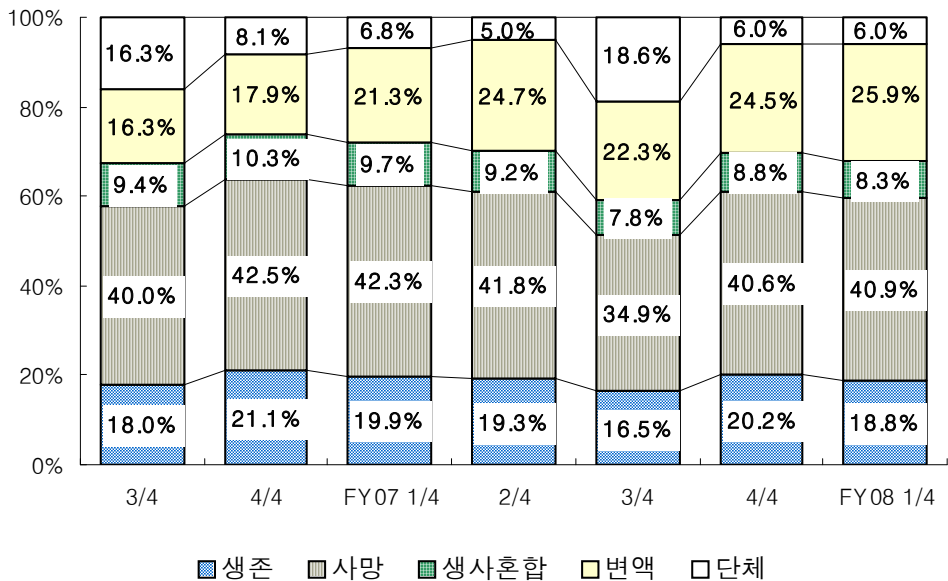
□ FY2008 1/4분기 생명보험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변액보험만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되었고 이 외 생존, 사망, 생사혼합의 비중은 축소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타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6%p 증가한 25.9%를 나타냄.

○ 개인보험 중 변액보험을 제외한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은 모두 변액보험 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되는 상황임.

○ 단체보험 또한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면서 비중이 축소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8 1/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5.9% 증가한 17조 1,896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FY2006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소비위축의 영향으로 연금상품의 신규가입이 축소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5% 성장하였음.
 - 신규가입 축소의 영향으로 연금상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초회보험료 비중이 높은 세제비적격 일반연금의 성장률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비해 더욱 둔화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의 성장세(전년동기대비 10.9%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서 부진을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4% 성장에 그침.
 - 저축성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해감에 따라 계속해서 수입보험료가 축소되고 있는 생사혼합보험은 시중금리 상승과 전반적인 보험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9.3%의 성장률을 기록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27.8%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개인보험 종목 중 유일하게 고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이는 지난해 변액보험의 고성장(50.9%)으로 인한 계속보험료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6.2%, 전분기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판매 실적은 둔화되고 있음.
 - 변액보험 중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8.0%, 28.7%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변액연금의 성장률이 변액유니버설에 비해 더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8.2% 성장한 1조 945억원을 기록함.
 - 기업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일반계정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3%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이어감.
 - 특별계정에서는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100%가 넘는 고성장을 보였던 퇴직연금이 1/4분기 신규가입 감소로 인해 -21.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단체보험 성장률 하락을 주도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36,266	130,166	34,612	34,008	35,507	37,275	141,403	34,444
	성장률	14.3	8.6	14.7	8.6	9.6	2.8	8.6	-0.5
	구성비	21.1	19.6	19.9	19.3	16.5	20.2	18.8	18.8
사망	보험료	72,985	285,637	73,721	73,777	75,176	75,026	297,700	74,786
	성장률	5.3	5.3	5.8	4.1	4.2	2.8	4.2	1.4
	구성비	42.6	43.0	42.3	41.8	34.9	40.6	39.6	40.9
생사 혼합	보험료	17,619	67,918	16,830	16,266	16,754	16,193	66,043	15,267
	성장률	0.6	-6.4	0.8	-2.2	-1.3	-8.1	-2.8	-9.3
	구성비	10.3	10.2	9.7	9.2	7.8	8.8	8.8	8.3
변액 보험	보험료	30,717	115,278	37,097	43,514	48,117	45,184	173,912	47,399
	성장률	-0.1	37.5	35.0	57.2	63.6	47.1	50.9	27.8
	구성비	17.9	17.3	21.3	24.7	22.3	24.5	23.2	25.9
개인 계	보험료	157,587	598,999	162,260	167,565	175,555	173,678	679,058	171,896
	성장률	5.5	9.4	12.6	14.4	16.3	10.2	13.4	5.9
	구성비	91.9	90.1	93.2	95.0	81.4	94.0	90.4	94.0
단체	보험료	13,960	65,550	11,924	8,848	40,120	11,006	71,898	10,945
	성장률	23.6	-2.5	-8.9	-3.7	36.9	-21.2	9.7	-8.2
	구성비	8.1	9.8	6.8	5.0	18.6	6.0	9.6	6.0
합계	보험료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184,684	750,956	182,840
	성장률	6.8	8.1	10.8	13.3	19.7	7.7	13.0	5.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8 1/4분기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사의 점유율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사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냄.
- 이는 수입보험료 중 초회보험료의 비중이 낮은 상위 3사가 전반적인 보험수요 둔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고, 외국사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중소형사가 선전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54.3%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점유율하락 추세를 이어갔으나 전기 수준을 유지함.
 -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한 22.3%를 기록하였으나 주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에서의 부진으로 성장속도는 소폭 둔화됨.
 -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3.9%p나 상승했으며 이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임.
 - 허핀달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132 떨어진 0.1257을 기록함.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3개사	60.7	62.3 (2.2)	58.4	56.3	57.7	54.3	56.7 (2.5)		54.3
외 국 사	21.0	20.1(16.7)	22.1	23.5	21.1	23.7	23.0(28.7)		22.3
국내중소형사	18.3	17.6(23.0)	19.5	20.2	21.2	22.0	20.3(30.8)		23.4
허핀달지수	0.1486	0.1554	0.1389	0.1326	0.1372	0.1268	0.1338		0.1257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8년 6월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5) 괄호는 연간 수입보험료 성장률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보험시장 동향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8 1/4분기 당기순이익은 기타수지는 개선되었으나 보험영업수지 및 투자영업수지가 악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4.3% 감소한 5,782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였으나, 지급보험금(8.9%), 사업비(13%), 신계약비상각액(12.0%) 증가로 보험영업비용이 8.8% 증가하여 보험영업수지는 37.3% 악화됨.
 - 투자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하였으나, 환율 급등으로 인한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투자영업비용이 92.9% 증가하여 투자영업수지가 1.9% 악화됨.
 - 변액보험 수수료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특별계정운용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타수지는 전년동기대비 67.2% 개선되었음.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1/4	2/4	3/4	4/4	1/4
총 수 익	보험영업	520,529	133,936	266,664	403,182	542,343	132,642
	투자영업	130,924	38,289	74,675	109,810	153,452	42,759
	기타	16,807	5,067	10,422	16,583	23,099	20,150
	소계	668,260	177,293	351,761	529,575	718,894	195,551
총 비 용	보험영업	418,740	105,648	224,377	367,748	501,328	114,908
	투자영업	19,616	5,487	10,741	17,750	28,558	10,584
	기타비용	6,817	1,906	3,836	4,492	6,691	14,864
	소계	445,173	113,040	238,954	389,990	536,577	140,356
수 지 차	보험영업	101,789	28,289	42,287	35,434	41,015	17,734
	투자영업	111,308	32,802	63,934	92,060	124,894	32,175
	기타	9,989	3,162	6,586	12,091	16,408	5,285
	소계	223,087	64,253	112,807	139,585	182,318	55,194
준비금전입		197,252	53,891	94,186	116,423	153,417	47,126
법인세		6,360	2,727	4,848	6,068	7,846	2,287
당기순이익		19,475	7,634	13,774	17,093	21,054	5,782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8 1/4분기 보험금지급률은 전반적인 수입보험료 성장을 둔화와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인해 모든 종목에서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며 사업비율 또한 증가하였음.
- 개인보험 중 수입보험료 증가폭이 특히 둔화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6.3%p, 14.3%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으며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함.
- FY2008 1/4분기 신계약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한 5.9%를 나타냈고, 해약률은 0.2%p 증가한 3.0%를 나타냄.
- 해약률을 주요 상품별로 보면 장기건강보험이 9.3%, 변액보험 전체가 3.8%, 변액연금보험 4.3%, 변액유니버설 4.0%, 퇴직보험 9.6%로 나타나고 있음.
 - 초회보험료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률은 증가했는데 이는 보험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료와 보유계약액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보험금지급률	56.5	52.8	52.2	60.2	60.9	65.1	59.5	56.8	
- 생 존	61.0	62.7	60.0	75.0	84.3	75.5	73.8	66.3	
- 사 망	40.3	39.2	37.4	40.3	43.8	44.6	41.6	41.9	
- 생사혼합	104.3	108.2	108.4	138.5	212.5	164.3	155.9	122.7	
- 변 액	26.3	18.8	30.1	35.0	38.8	30.9	33.9	31.4	
- 개 인 계	49.5	48.2	47.9	55.5	66.7	58.8	57.4	51.1	
사 업 비 율	19.2	18.2	17.8	18.9	17.2	20.3	18.5	19.2	
신 계 약 률	24.5	24.5	5.4	11.6	18.1	25.5	25.5	5.9	
해 약 률	10.6	10.6	2.8	5.4	8.0	10.3	10.3	3.0	

주 : 1) 보험금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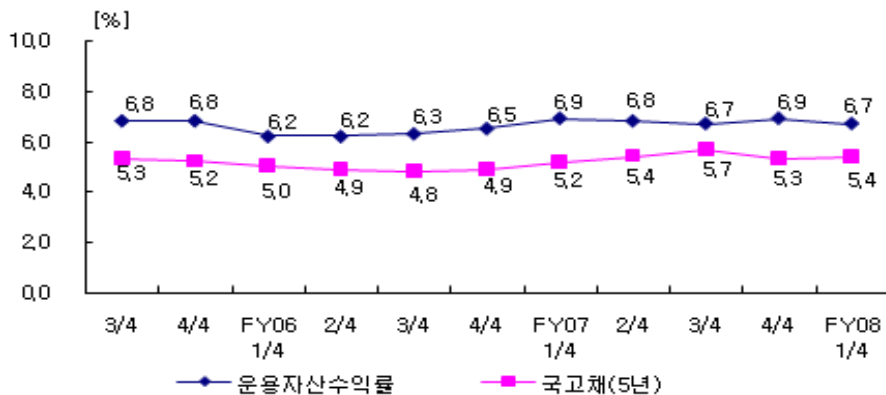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8 1/4분기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6.7%를 기록함.
- 유가증권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1.3%p감소한 23.3%를 나타낸 반면 대출채권의 비중은 1.7%p 증가한 23.3%로 나타남.
- 수익률은 유가증권이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한 6.2%를 기록했으며 대출채권은 8.7%를 기록하였고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은 수익률이 하락한 반면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수익률은 상승함.
- 특별계정자산 수익률은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8.5%p 감소한 7.1%를 기록함.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 3)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ECOS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1/4		2/4		3/4		4/4		1/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2.2	4.6	2.5	4.4	3.2	4.2	3.2	4.5	3.0	5.4
유 가 증 권	60.6	6.6	60.4	6.4	59.4	6.2	59.7	6.3	59.3	6.2
○ 단기매매증권	2.1	18.4	2.0	14.6	1.9	12.1	1.5	10.9	1.4	8.4
- 주 식	0.2	97.7	0.2	75.0	0.2	56.6	0.2	43.7	0.2	21.6
- 채권 등	1.0	11.5	1.0	9.0	0.8	8.5	0.7	8.1	0.6	6.6
- 수익증권	1.0	14.3	0.9	12.1	0.9	9.7	0.6	8.8	0.7	7.0
○ 매도가능증권	47.7	5.2	47.5	5.5	46.1	5.6	46.8	6.0	46.4	6.0
- 주 식	5.1	3.2	5.2	3.6	5.2	3.2	5.2	5.4	5.2	3.2
- 채권 등	39.2	5.4	38.5	5.5	37.1	5.7	38.1	5.7	37.8	5.7
- 수익증권	3.4	6.2	3.7	8.6	3.8	7.9	3.5	10.0	3.4	13.8
○ 만기보유증권	10.0	5.6	10.0	5.7	10.5	5.7	10.5	5.8	10.5	5.8
- 채권 등	10.0	5.6	10.0	5.7	10.5	5.7	10.5	5.8	10.5	5.8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9	66.1	0.9	42.0	0.9	30.8	0.9	22.7	1.0	17.5
대 출 채 권	21.7	8.8	21.8	8.9	22.7	9.0	22.6	9.2	23.3	8.7
부 동 산	4.1	4.0	4.1	4.1	4.1	4.2	4.0	4.3	4.1	4.4
운 용 자 산 계	88.6	6.9	88.8	6.8	89.4	6.7	89.6	6.9	89.7	6.7
비 운 용 자 산	11.4	3.2	11.2	2.6	10.6	2.1	10.4	3.6	10.3	7.2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84.7)	6.5	100.0 (83.8)	6.3	100.0 (83.5)	6.2	100.0 (82.9)	6.5	100.0 (82.5)	6.8
특 별 계 정 자 산	15.3	15.6	16.2	13.9	16.5	11.2	17.1	9.4	17.5	7.1
총 자 산	100.0	7.8	100.0	7.5	100.0	7.0	100.0	7.0	100.0	6.8
총 자 산 규 모	2,827,112		2,914,092		2,973,394		3,053,998		3,093,354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8 1/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설계사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방카슈랑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6.0%p 증가한 42.5%를 기록, 설계사 비중은 35.5%를 넘어섰으며, 이는 변액보험에서 설계사의 초회보험료가 큰 폭 줄어든 반면 방카슈랑스의 초회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 특히 국내중소형사의 방카슈랑스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방카슈랑스의 성장을 이끔.
 -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총 초회보험료에서 상위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3%, 외국사 38.7%, 중소형사 42.0%로 중소형사의 방카슈랑스 비중이 외국사를 앞지름.
 - 그 외 임직원과 대리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성장하였으며 이는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초회보험료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비중 증가인 것으로 판단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임 직 원	24.7	22.5	12.3	11.5	19.9	11.9	14.4	13.2
설 계 사	32.8	40.1	43.0	46.6	42.2	44.9	42.0	35.5
대 리 점	6.8	6.4	8.2	10.0	11.3	9.2	9.4	8.6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35.7	30.7	36.5	31.8	26.7	34.0	34.2	42.5
기 타	0.0	0.1	0.0	0.0	0.0	0.0	0.0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6,540	88,233	23,630	26,322	31,783	49,951	107,478	20,072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8 1/4분기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수는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각각 27,807명, 148,763명, 11,411개를 기록함.
- 설계사 수는 설계사의 초회보험료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9.9% 증가하였으며 대리점은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감.
- 최근 설계사의 모집조직을 살펴보면, 중소형사의 남자설계사 수의 확대에 의해 성별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추세임.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1/4	2/4	3/4	4/4	1/4
임 직 원	26,868	26,848 (3.1)	27,070	27,105	29,111	27,807 (3.6)
설 계 사	131,850	135,416 (7.9)	136,772	139,510	144,324	148,763 (9.9)
대 리 점	9,746	10,048 (-7.1)	10,400	10,667	11,124	11,411 (13.6)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8 1/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세 및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한 8조 9,550억원을 기록하였음.
- FY2006과 FY2007 장기손해보험은 20%대 전후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FY2008 1/4분기에는 상해 및 통합형 보험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6.1%의 성장을

보험시장 동향

을 기록해 그 성장 폭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감소 및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가 반영되면서 전년동기대비 6.0%의 성장률을 기록함.
- 반면, 일반손해보험에서는 특종 및 해상보험의 양호한 성장을 비롯한 보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3%의 두 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있음.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76,309	295,829	79,300	81,659	92,201	86,658	339,818	89,550
	18.3	15.0	14.5	12.9	18.3	13.6	14.9	12.9
총 자 산	569,713	569,713	595,159	613,256	638,392	660,151	660,151	680,358
	2.5	15.6	4.5	3.0	4.1	3.4	15.9	3.1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8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1% 성장한 68조 358억원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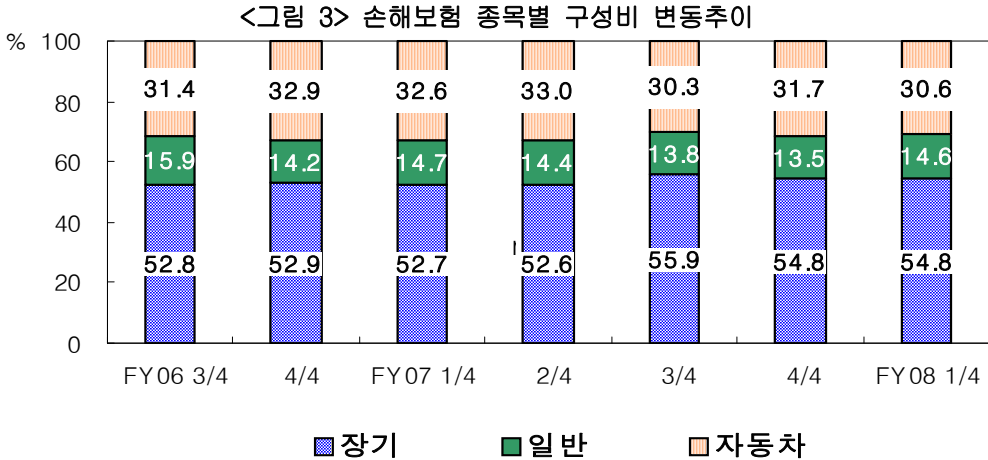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증가는 장기손해보험의 높은 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증가 및 운용자산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투자영업이익도 크게 상승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8 1/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이 54.8%를 차지하였으며, 자동차보험 30.6%, 일반손해보험이 1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2.1%p 상승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최근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구성비 확대에 의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2.0%p, 0.1%p 감소하였음.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

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8 1/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7,3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FY2007 자동차의 성장률인 12.0%를 하회하는 수준임.

○ 한편, 자동차보험 시장은 최근 대형차량 증가 및 수입차 신규등록 증가세 등 차량의 고급화에 따른 대당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 제한이 손해를 개선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하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약 관 개정 예정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FY2008 1/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통합형 보험의 고성장세 지속을 비롯한 상해 및 저축성부문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6.1% 성장한 4조 4,857억원을 기록하였음.

○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통합형 보험이 30.7%, 상해보험이 23.7%, 저축성보험이

10.2%로 전체 성장을 견인하였음.

- 통합형 보험의 경우 의료서비스 및 건강검진서비스, 장례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대형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에서 의료실손보험과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을 통합한 생명보험설계사 교차판매용 통합보험을 집중 개발하고 있어 교차판매의 성과에 따라 성장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저축성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책정한 중소형사들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반면, 질병보험은 전년대비 16.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재물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각각 4.5%, 1.6%의 성장에 그침.
- o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9% 성장, 원수보험료 대비 초회성장이 현저히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장기보험의 급성장(FY2007 19.5%)으로 인한 계속보험료 유입의 효과로 풀이됨.
- 그러나, 최근의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향후 장기보험의 성장세는 다소 위축될 수 밖에 없으리라 전망됨.

□ FY2008 1/4분기 화재보험의 원수보험료는 701억원으로 일반물건의 보험료 인하 및 건설·투자부문의 성장 둔화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5.7%)을 지속하고 있음.

□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에 있어서는 전년동기대비 24.9% 성장한 2,166억원을 기록함.

- o 조선건조량 사상최대 기록 및 고가선박 증가 추세로 인해 선박보험은 건조보험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2.7% 성장하였으며,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적하 및 항공보험에서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5.1%,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758	3,132	743	679	878	775	3,075	701
	성장률	-3.5	-3.4	-1.8	-5.2	-2.6	2.3	-1.8	-5.7
	구성비	1.0	1.1	0.9	0.8	1.0	0.9	0.9	0.8
해 상	보험료	1,314	6,323	1,735	1,783	1,486	1,514	6,518	2,166
	성장률	10.9	19.9	-17.4	11.2	13.9	15.2	3.1	24.9
	구성비	1.7	2.1	2.2	2.2	1.6	1.7	1.9	2.4
자동차	보험료	25,106	96,492	25,838	26,913	27,900	27,444	108,095	27,397
	성장률	13.6	9.8	14.3	10.6	14.1	9.3	12.0	6.0
	구성비	32.9	32.6	32.6	33.0	30.3	31.7	31.8	30.6
보 증	보험료	2,718	11,428	2,424	2,341	2,602	2,573	9,940	2,814
	성장률	3.4	13.5	-18.4	-12.2	-15.3	-5.3	-13.0	16.1
	구성비	3.6	3.9	3.1	2.9	2.8	3.0	2.9	3.1
특 종	보험료	5,872	24,987	6,584	6,728	7,455	6,478	27,245	7,209
	성장률	14.0	9.1	7.2	9.2	9.4	10.3	9.0	9.5
	구성비	7.7	8.4	8.3	8.2	8.1	7.5	8.0	8.1
해 외 원보험	보험료	184	823	191	254	298	383	1,126	224
	성장률	6.4	35.2	22.4	23.9	7.1	108.7	36.8	16.9
	구성비	0.2	0.3	0.2	0.3	0.3	0.4	0.3	0.2
장 기	보험료	37,072	136,802	38,628	39,850	41,650	43,308	163,436	44,857
	성장률	23.9	21.5	22.4	19.5	19.6	16.8	19.5	16.1
	구성비	48.6	46.2	48.7	48.8	45.2	50.0	48.1	50.1
개 인 연 금	보험료	2,136	7,975	2,265	2,388	2,629	2,713	9,995	2,907
	성장률	19.4	14.3	23.4	26.8	24.0	27.0	25.3	28.3
	구성비	2.8	2.7	2.9	2.9	2.9	3.1	2.9	3.2
퇴 직 보 험	보험료	1,149	7,868	892	724	7,303	1,471	10,390	1,274
	성장률	52.8	2.1	-21.2	-47.2	73.2	28.1	32.1	42.8
	구성비	1.5	2.7	1.1	0.9	7.9	1.7	3.1	1.4
계	보험료	76,309	295,829	79,300	81,659	92,201	86,658	339,818	89,550
	성장률	18.3	15.0	14.5	12.9	18.3	13.6	14.9	12.9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관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8 1/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1% 상승한 2,814억원을 기록

보험시장 동향

- 부동산담보대출인정비율(LTV) 관리강화와 모기지신용보험(MCI) 등 신용보험영역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보증사의 해외진출 및 ABS보증보험 판매 등 사업 확대의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회복함.
-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책임부문의 성장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성장한 7,209억원을 시현함.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보험은 기업성보험의 성장 감소로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상해보험의 고성장 기조와 책임보험의 배상책임 보상범위 확대에 따른 관심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8%, 6.8%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기술보험은 건설공사보험에서의 성장세 부진을 조립보험의 성장세 확대로 극복하여 전년동기대비 11.7%의 성장률을 기록함.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8 1/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 장기보험 위주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증가로 인해 대형사의 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축소된 반면, 온라인 단종보험회사 및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확대되었음.
-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1.5%p 감소한 69.1%로 나타났으며, 전업사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보험료 성장 회복으로 점유율은 전년대비 0.1%p 확대됨.
- 반면, 장기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증가와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판매활성화로 온라인 단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0.1%p 성장한 3.6%의 비중을 차지함.
- 2007년 5월 악사(AXA)의 교보자동차회사의 인수·합병에 이어 2008년 3월 글로벌 보험회사인 에르고가 다음다이렉트의 지분 65%를 인수하면서 외국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대형사의 시장점유율 감소와 온라인 단종보험회사 및 전업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0.1453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시장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점유비	상위4개사	71.0	71.0(15.1)	70.6	70.7	70.4	70.1	70.1(13.0)		69.1
	일반사 계	94.6	94.6(15.4)	94.0	93.9	93.9	93.9	93.9(13.5)		93.8
	온라인단종사	3.0	3.0(46.9)	3.5	3.6	3.6	3.7	3.7(43.5)		3.6
	전 업 사	4.0	4.0(13.5)	3.1	3.0	3.0	3.0	3.0(-13.0)		3.2
	외 국 사	1.4	1.4(36.2)	2.9	3.1	3.1	3.1	3.1(151.4)		3.7
허 편 달 지 수		0.1531	0.1531	0.1507	0.1518	0.1503	0.1487	0.1487		0.1453

주 : 1) 일반사 계에는 온라인단종사(교원나라, 현대하이카) 실적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자와 재보 6사, 외국사는 교보AXA자동차,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동경해상일동 7개사임.
 2) 허편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누적기준 실적치이며, ()는 전년동기대비 수입보험료 성장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8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성과는 보험영업이익이 1,141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반전되었고, 투자영업이익의 흑자가 더해져 당기순이익은 6,480억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주식시장 하락 등 자산운용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성장으로 운용자산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한 7,842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익은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세 지속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한 8조 4,828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증가 등으로 보험영업비용이 14.7% 증가한 8조 3,687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보험영업수지는 1,141억원을 시현함.
-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수지는 23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영업 수지차의 성장세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은 5,389억원으로 증가함.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1/4	2/4	3/4	4/4	1/4
총 수 익	보험영업	266,230	73,382	149,896	229,715	312,320	84,828
	투자영업	28,556	9,213	18,494	27,232	36,296	10,526
	기타	12,747	910	1,395	10,463	12,939	2,142
	소계	307,533	83,505	169,785	267,410	361,555	97,496
총 비 용	보험영업	274,656	72,948	150,095	230,111	314,449	83,687
	투자영업	6,161	1,988	3,841	5,556	9,598	2,684
	기타비용	10,543	1,387	2,109	11,656	14,217	2,211
	소계	291,360	76,323	156,046	247,323	338,264	88,582
수 지 차	보험영업	-8,426	434	-199	-395	-2,129	1,141
	투자영업	22,395	7,225	14,652	21,676	26,698	7,842
	기타	2,204	-477	-714	-1193	-1,278	-69
	소계	16,173	7,182	13,739	20,088	23,291	8,914
법 인 세		5,501	1,992	3,679	5,611	6,597	2,434
당기순이익		10,673	5,189	10,060	14,477	16,694	6,480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8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0%p 감소한 97.2%를 기록하면서 소폭 개선됨.
- 손해보험의 실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한 반면, 전체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2.1%p 감소함에 따라 합산비율이 소폭 하락함.
-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개선에 힘입어 손해보험 산업의 전체 손해율은 73.7%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FY2007에 접어들면서 보험료 현실화 및 고급차 증가에 따른 대당보험료 상승, 고유가로 인한 차량 이용 감소로 인해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5.5%p 감소한 68.1%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은 공장 및 일반물건의 손해율이 악화되었고, 해상보험은 선박 부문의 손해율 악화가 해상 전체 손해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종보험의 경우 단체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1/4	2/4	3/4	4/4	1/4
손해율	화재보험	39.6	40.9	47.0	44.0	44.2	43.0
	해상보험	52.1	47.3	54.8	58.7	57.7	52.9
	자동차보험	79.0	73.6	73.7	73.9	73.0	68.1
	보증보험	23.4	28.0	24.3	17.8	19.5	23.7
	특종보험	55.3	54.3	56.5	58.2	60.4	57.8
	해외원보험	44.7	26.8	29.4	30.6	34.6	38.1
	장기보험	83.9	81.8	81.5	81.3	80.7	80.0
	개인연금	125.4	115.8	116.0	116.4	121.7	115.7
	전 체	78.6	75.8	75.9	75.9	75.7	73.7
사업비율		23.8	22.4	23.0	23.0	23.5	23.5
합산비율		102.3	98.2	98.9	98.9	99.2	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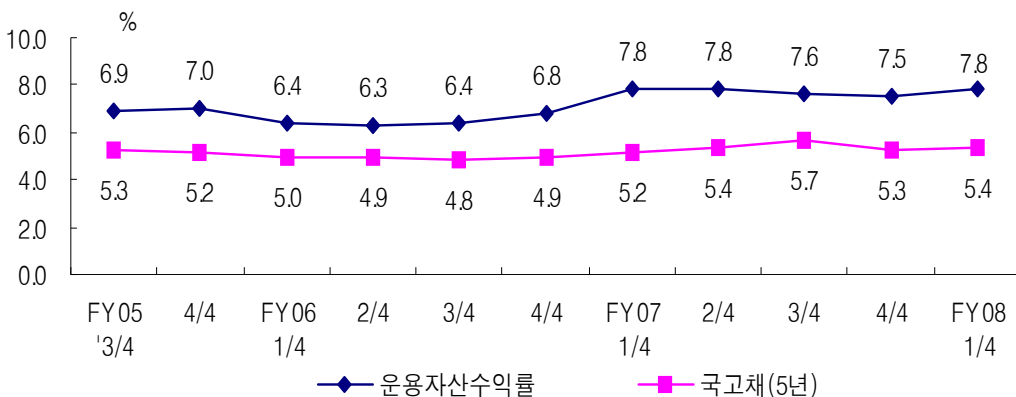
주 :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며, 분기별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8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과 동일한 7.8%를 기록하였으며, FY2007 1/4분기 이후 7%대 중후반의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음.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시장 동향

- 손해보험회사의 매도가능증권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7.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 수익률 감소 및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주식 수익률 악화에 기인한 것임.
- 현금과 예금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한 6.3%를 차지하였으며, 수익률은 6.8%로 전년동기대비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7								FY2008	
	1/4		2/4		3/4		4/4		1/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금과예금	4.8	5.0	5.3	4.9	5.9	4.9	6.1	5.7	6.3	6.8
유가증권	55.0	8.8	54.5	8.7	53.5	8.4	53.8	10.9	53.3	7.6
○단기매매증권	5.7	16.7	5.3	15.3	5.0	12.5	5.0	14.5	4.5	9.1
-주식	0.2	157.7	0.4	143.2	0.3	112.6	0.3	112.6	0.4	22.6
-채권등	3.5	13.8	3.3	11.0	2.8	10.5	2.6	12.9	2.0	9.6
-수익증권	2.0	6.5	1.6	6.5	2.0	5.7	2.1	7.0	2.1	6.6
○매도가능증권	45.8	7.8	45.6	8.0	45.1	7.9	45.5	10.5	45.5	7.0
-주식	6.6	19.8	6.5	20.6	6.5	17.9	6.5	23.1	5.9	7.4
-채권등	36.6	6.1	36.1	6.4	35.7	6.1	36.4	8.4	35.9	6.9
-수익증권	2.7	8.6	3.0	8.5	2.9	11.1	3.1	11.6	3.7	6.6
○만기보유증권	2.7	6.1	2.6	5.9	2.4	5.9	2.3	8.4	2.2	6.7
-채권등	2.6	6.1	2.6	5.9	2.4	5.9	2.3	8.4	2.2	6.7
○투자주식 ¹⁾	0.9	13.7	0.9	15.0	1.0	12.6	1.0	13.1	1.1	32.5
대출채권	18.0	7.3	18.1	7.4	18.3	7.5	18.1	7.6	18.3	7.7
부동산	6.3	3.5	6.2	3.5	6.2	3.4	6.2	3.5	6.0	11.1
운용자산계	84.2	7.8	84.1	7.8	83.9	7.6	84.2	7.5	84.0	7.8
비운용자산	15.8	-	15.9	-	16.1	-	15.8	-	16.0	-
일반계정자산계	100.0	6.6	100.0	6.6	100.0	6.4	100.0	6.3	100.0	6.6
	(96.3)	-	96.5	-	96.6	-	96.2	-	96.3	-
특별계정자산	3.7	-	3.5	-	3.4	-	3.8	-	3.7	-
총자산	100.0	6.4	100.0	6.4	100.0	6.2	100.0	6.1	100.0	6.3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유가증권의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감소한 7.6%를 기록한 반면, 대출채권

의 경우 0.4%p 상승한 7.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채권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 같은 장기보험 위주의 재편은 손해보험회사의 사업기반 확보와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채권과 주식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상승하였음.
 - 대출채권 비중의 경우 일반계정 자산의 18.3%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0.3%p 확대된 반면, 부동산의 비중은 0.3%p 감소한 6.0%를 차지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 비중은 총자산 대비 84.0%로 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타자산의 미수보험료(원수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미입금된 보험료) 증가 등 비운용자산의 비중이 확대된 것에 기인함.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8 1/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는 T/M 및 C/M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직급과 대리점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확대된 반면, 설계사 및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감소함.
 -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12.6%를 차지하였으나, 설계사를 통해 거수된 원수보험료 비중은 0.6%p 감소한 34.1%를 기록함.
 - 대리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46.9%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반면,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한 5.4%를 차지하였음.
 - 중개사 및 공동인수의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동일한 0.7%, 0.4%를 차지함.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1/4	2/4	3/4	4/4	1/4
회사직급	36,508	9,369	19,053	29,314	39,230	11,098
	12.7	11.9	12.0	12.0	11.9	12.6
보험설계사	102,379	27,197	55,348	83,871	113,090	30,067
	35.6	34.7	34.7	34.3	34.3	34.1
대 리 점	131,298	36,592	74,176	114,587	154,833	41,416
	45.6	46.7	46.6	46.9	47.0	46.9
중개사	2,470	582	1,290	2,105	2,759	644
	0.9	0.7	0.8	0.9	0.8	0.7
방카슈랑스	13,907	4,334	8,721	13,127	17,724	4,723
	4.8	5.5	5.5	5.4	5.4	5.4
공동인수	1,398	334	754	1,235	1,790	328
	0.5	0.4	0.5	0.5	0.5	0.4

주 : 1) 분기별 실적은 누적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8 1/4분기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에서는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대리점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임직원의 생산성에 있어서는 종업원 수가 전년동기대비 5.0% 늘어나면서 이를 통해 거수된 원수보험료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성은 12.8% 상승하였음.
-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모집조직의 전문화·정예화 추세로 인해 고객의 맞춤형서비스 등 고급화 전략으로 전년동기대비 생산성 증가폭은 다소 둔화됨.
- 반면, 대리점의 수는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한 반면, 독립판매법인대리점(GA)의 성장으로 생산성은 오히려 1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1/4	2/4	3/4	4/4	1/4
임 직 원	25,849	25,969 (0.9)	26,602	26,957	27,394	27,278 (5.0)
	141,235.8	36,077.1 (-4.2)	71,624.0	108,744.5	143,208.2	40,686.1 (12.8)
보험설계사	73,408	72,045 (-2.9)	71,299	71,742	71,423	73,698 (2.3)
	139,465.3	37,750.5 (17.0)	77,627.6	116,906.9	158,338.7	40,797.9 (8.1)
대 리 점	44,275	43,818 (-3.7)	42,493	42,423	42,311	42,443 (-3.1)
	296,551.9	83,510.0 (22.6)	174,561.5	270,106.4	365,941.0	97,579.8 (16.8)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세계보험시장 동향

1. 세계 보험시장

- '07년도 세계 보험시장의 보험료 규모는 4조 609억 달러로 전년대비 3.3% 성장함.
- 생명보험은 2조 3,931억 달러로 연금 및 저축성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변액보험 등 투자형상품의 호조에 힘입어 5.4%가 성장함.
- 고령화에 따라 연금 및 저축성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주식시장 호황으로 변액보험 등 투자형 보험이 성장을 주도함.
- 손해보험은 1조 6,678억 달러 규모이며,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보험요율 인하 등으로 성장률이 0.7%에 그침.

<표 1> 세계 보험시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수입보험료(생보:손보)		성장률	시장 점유율	보험 침투도	보험 밀도
	2006	2007				
아메리카	1,333,591(45:55)	1,417,463(47:53)	2.5	34.9	7.6	1,573.3
유럽	1,455,509(61:39)	1,680,693(62:38)	3.4	41.4	8.0	1,962.4
아시아	777,680(74:26)	840,601(74:26)	4.5	20.7	6.2	210.7
선진국	3,342,459(58:42)	3,646,523(60:40)	2.5	89.8	9.1	3,577.2
신흥국	332,433(52:48)	414,347(53:47)	11.8	10.2	2.8	72.8
세계전체	3,674,892(58:42)	4,060,870(59:41)	3.3	100.0	7.5	607.7

자료 : Swiss Re. sigma No 3/2008.

- 한편, 선진보험시장*은 손해보험이 전년대비 0.3% 마이너스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이 4.7% 성장하여 전체 시장은 2.5%의 성장률을 기록함.
- 반면, 신흥보험시장**에서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전년대비 각각 13.1%,

10.2%로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전체보험시장의 성장 및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북미, 서유럽, 일본·한국 등 일부 동아시아 지역(G7, EU를 비롯한 27개국)

** 남·동아시아, 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 그러나 세계보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진보험시장의 비중이 전년도 92%에서 90%로 다소 하락함.

<세계 주요국가별 보험시장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수입보험료		성장률	시장 점유율	보험 침투도	보험 밀도
	순위	2007				
미국	1	1,229,668	1.8	30.3	8.9	4086.5
영국	2	463,686	15.3	11.42	15.7	7,113.7
일본	3	424,832	-3.2	10.5	9.6	3319.9
프랑스	4	268,900	-2.9	6.62	10.3	4,147.6
독일	5	222,825	-1.3	5.49	6.6	2,662.1
이탈리아	6	142,328	-8.8	3.50	6.4	2,322.0
한국	7	116,990	11.1	2.9	11.8	2,384.0
네덜란드	8	102,831	1.1	2.5	13.4	6,262.9
캐나다	9	100,398	6.4	2.5	7.0	1,667.0
중국	10	92,487	19.0	2.3	2.9	69.6
스페인	11	74,696	1.2	1.8	5.2	1,699.9
호주	12	62,233	4.2	1.5	6.8	3,000.2
아일랜드	13	60,693	na	1.49	11.6	7,171.4
대만	14	60,446	16.2	1.5	3.4	129.7
인도	15	54,375	13.0	1.3	4.7	46.6

자료 : Swiss Re. sigma No 3/2008.

2. 우리나라 보험시장

- 보험료 규모는 전년대비 11.1% 성장한 1,170억 달러(생명보험 813억 달러, 손해보

보험시장 동향

험 357억 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함.

○ 보험밀도는 2,384달러로 21위, 보험침투도는 11.8%로 5위를 각각 차지함.

□ 생명보험은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의 판매 호조로 10.5% 성장하면서 전년도와 같은 세계 7위를 기록하였으며, 손해보험도 경제성장 추세에 힘입어 12.4% 성장하여 세계 10위를 기록함.

○ 다만 전체 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로 세계수준(41.1%)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3. 2008년 전망

□ 생명보험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및 주식시장의 불안정에 따라 성장률 및 수익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자본시장이 안정되어 성장률과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손해보험의 경우 경기침체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고전이 예상됨.

○ 선진보험시장의 보험료 규모가 '07년에 비해 하락하고 신흥보험시장의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하여 일부 보험종목(책임보험 및 장기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예상됨.

4. 시사점

□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영향이 은행 등 타 금융권에 비하여 작은 편이지만, 2008년부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9월 Lehman Brothers의 파산신청, Bank of America에 의한 Merrill Lynch 합병, AIG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선진보험시장은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수요의 증가 및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의 성장이 예상됨.
 - 새로운 보험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후대비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장수리스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필요함.
- 신흥보험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 중국, 인도 등 남·동아시아를 비롯하여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보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시장 확대 전략이 필요함.

* 자료 :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주간해외동향, 2008.7.7.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 보도자료, 2008.8.5.

국내제도 동향

1. 넙치(광어)에 대한 재해보험 7월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 | | |
|---|---|
| <p>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에
대한 재해보험
실시</p> <p>수협중앙회가
운용 전국
회원조합에서
보험상품에 가입</p> <p>전국 평균
순보험료는
1.7%이며,
지역별 차등
적용</p> | <p>□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관련 법령 제정 작업을 완료하고 올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p> <p>○ 시범사업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광어)가 대상이며 수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전국 회원조합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p> <p>○ 계약은 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분되며 태풍, 폭풍, 해일, 적조로 인한 수산물 손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과 양식시설물은 특약으로 운용됨.</p> <p>○ 가입대상인 넙치는 부화 5개월 이후나 100g 이상이어야 하고 양식시설물에는 보험가입기간 이상 임차한 시설물을 포함되며,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바이러스성, 세균성 및 기생충성으로 구분하여 보상이 가능한 기간과 함께 규정하였음.</p> <p>- 바이러스성(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해산 버나바이러스 감염증, 넙치 랩도바이러스 감염증, 이리도바이러스병) :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그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p> <p>- 세균성(에드워드균 감염증, 연쇄구균 감염증) :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그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단,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제외)</p> <p>- 기생충성(스쿠티카 감염증, 백점충 감염증) :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그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단,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제외)</p> <p>□ 보험요율은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전국평균 순보험료는 1.7%임.</p> |
|---|---|

- 어업인의 보험료 59%는 국고로 지원
- 방재시설 할인, 일시납 할인, 계속계약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포함하는 경우 가입금액이 10억원인 제주도 어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포함하여 1,185만원 수준이며, 이 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함.
 - 어업인이 지급하는 보험료의 59%(순보험료:50%, 운영사업비:70%)를 국고로 지원함.
- 2010년 이후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태풍·적조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경영위험을 크게 감소시켜 우리나라 양식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시범사업이 끝나는 2010년부터 이 제도를 해상가두리, 전복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보도자료, 2008.7.1.

2. 금융상품 모집인제도 정비

금융상품
모집인제도
전반을 정비

-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상품 모집인*에 의한 과당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발생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금융상품 모집인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기로 하였음.

- * 금융기관 위탁을 받은 금융상품 판매계약체결을 중개하는 개인(전문법인)
- 이는 금융회사들의 치열한 외형확대 경쟁에 따라 모집인의 모집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모집인의 불법위규행위가 심해지면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는 물론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08.8.30.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시행

<모집인 제도 개요>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전담 투자상담사	펀드 취득권유인*	보험설계사
인원수	45,471	10,106	983	41,069	215,000
법적근거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운영기관	신용카드사, 은행	은행, 상호저축 은행, 보험회사, 농협단위조합	증권회사 선물회사	판매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보험회사
모집인 신분	1사 전속	1사 전속	1사 전속	1사 전속	1사 전속**
자격시험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의무교육 주관기관	각 금융회사	각 금융회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업 협회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제도가 미비한
모집인을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마련

- 주 : * ‘09.2월 시행되는 자통법에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으로 규정. 간접투자자산 뿐만 아니라 증권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 투자 권유 가능
- ** ‘08.8.30. 교차모집제도 시행

- 따라서 여타 모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가 미비한 신용카드 및 대출모집인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용카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실태
기동점검반
확대 운영

- ☐ 법규 미비사항 정비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무자격 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도입 및 모집인 등록제도 개선, 자격제도 도입 등.
- ☐ 신용카드 모집실태 점검 강화
 - 업계 자율 운영 중인 ‘모집실태 기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추가로 여신금융협회 주관의 합동 기동점검반을 구성

대출모집인
법제화 추진

<대출 모집인>

- ☐ 은행 대출모집인 법제화 추진, 대출모집인 정보공유 및 교육 강화 방안 마련, 대출모집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

‘09.2.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투자권유대행인>

-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제도를 도입(2009년 2월 시행) 및 정착 노력

모집질서
문란행위 금지
및 교차모집
시행에 적극
대응

<보험설계사>

- ☐ 현행제도에 따른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 지속 점검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금지, 교차모집 시행에 적극 대응

* 자료 :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감독총괄팀 보도자료, 2008.7.9.

3. 한국인 평균수명 79.1세, OECD 평균 78.9세 앞질러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9.1세로
OECD회원국을
상회

- 2006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1년(76.4세)에 비해 2.7년이 늘어난 79.1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 78.9세를 상회하였음.
- 2001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6.4세로 OECD 평균수명 77.7세보다 낮았으나, 2006년도에는 79.1세로 OECD 평균수명인 78.9세를 넘어섰음.
- 2006년 우리나라의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8.5병상으로, 2001년(6.1병상)에 비해 2.4병상 증가하였고, OECD 회원국의 병상 수 5.5병상보다 3.0병상 더 많음.
- 2006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2001년(1.4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의사 수 3.1명보다는 적음.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2005년)로 2002년(10.6회)보다 1.2회 늘어났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외래 진찰 6.8회를 크게 상회함.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지출은
GDP의 6.4%

-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3.5일(2003년)로 2001년 13.0일보다 0.5일 늘었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원일수 9.6일 보다 3.9일 많음.
-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GDP의 6.4% 수준으로 2001년 5.2%에 비해 1.2%p가 증가, 2006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지출 수준은 8.9%임.
-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5.1%로 2001년 54.5%보다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지출 비율은 73.0%임.
-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의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06년 55.1%로 OECD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 국	43.1	48.5	54.5	53.1	51.7	52.4	53.1	55.1
OECD	72.7	72.3	72.7	73.0	73.2	72.7	72.9	73.0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480달러로
2001년 대비
1.6배 증가

□ 200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PPP, 미달러 기준)은 1,480달러로 2001년 907달러에 비해 1.6배 증가,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2,824달러임.

□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25.3%(2005년)로 2001년 30.4%보다 5.1%p 감소하였으나, 2006년 OECD 회원국 평균 흡연율 23.4% 보다는 다소 높음.

○ 특히, 우리나라 여자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반면, 남자 흡연율은 가장 높음.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담당관 보도자료, 2008.7.25.

4. 교차모집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교차모집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융감독원은 8월 30일 부터 시행된 교차모집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차모집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도 ○ 교차모집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생·손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임. ○ 한편, 보험설계사가 생·손보 상품을 동시에 취급함에 따라 충분한 상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
교차모집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방지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	□ 이에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교차모집 시행시 우려되는 불완전판매, 모집질서 혼란 등의 제반 문제점 방지를 위해 금융위·협회·업계와 공동으로 「교차모집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교차모집 시행에 대비하여 회사간 업무제휴 추진, 교차모집설계사 등록시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음.
교차모집 계약 체결을 강요 또는 금품제공 시 엄정하게 대응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 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 등 시장의 애로사항 - 보험회사 교차판매 준비현황 점검 - 교차판매 운영실태 및 법규 위반 행위 여부 □ 동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준비 상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 특히,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회사와 교차모집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금품제공을 통한 보험설계사의 불법유치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임.

본 제도의
원활한 정책을
위해 관계자
모두의 올바른
이해가 요구

- 한편, 금융감독원은 교차모집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보험소비자 및 보험설계사의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
 -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 및 상품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 보험설계사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본의 아니게 이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함.

* 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보험영업감독팀 보도자료, 2008.8.8.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09년 2월) 이전에 제도개선 사항 등 반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자통법 개선
사항 반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상장법인 재무특례 규정 이관>

- ① 합병 등 원활화를 위해 합병 등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이사회 결의 사실을 알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안 제165조의5제1항).
- 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에 대해 주주-법인간 이견이 있는 경우 금융위가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정부가 민사관계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므로 폐지(안 제165조의5제3항)

상장법인
재무특례 규정
이관 및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 반영>

- ①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외감법을 준용(안 제162조 및 제170조)
- ② 일반상품을 기초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대량 보유한 경우 보고 의무를 부과(안 제173조의2제1항)
- ③ 미공개 중요 정보를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안 제173조의2제2항)
- ④ 現先 연계 역방향 시세조종 금지제도 보완(안 제176조)

관련 법령
선진화 작업을
실시

<법령 선진화 작업>

- 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업무정지 기간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서 명시(안 제430조)
- ② 과징금·과태료의 결손처분, 환급금·환급가산금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 제449조제7항)
- ③ 양벌규정 개선(안 제448조)

<제도개선 과제>

제도개선을 위해
일부과제 폐지 및
보완, 완화 조치를
실시

- ①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헤지펀드 도입 근거를 마련(안 제249조·의2)
- ②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제107조 삭제)
- ③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보완 (안 제174조)
- ④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제도개선 (안 제234조)
- ⑤ 집합투자업 경영 은행·보험 임원겸직 제한 완화
- 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PEF의 투자제한 완화(안 제274조)
- ⑦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정보교류 확대(안 제437조)
- ⑧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 시에도 예비인가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商號로서 “금융투자”, “선물”을 추가,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주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등

<조문정비 사항>

각 조문사항을
정비 및 본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국회에 제출

-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
 -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안 제246조)
 - ③ 펀드 종류별 최소투자 비율 준수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안 제81조)
 - ④ PEF 해산·청산에 대해 투자회사 해산·청산 관련 규정을 적용(안 제277조)
 - ⑤ 금융위원회 긴급처분권(제413조)은 시스템 리스크가 제한적인 협회 장외시장에는 적용 배제(안 제289조)
- ☐ 8.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

* 자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보도자료, 2008.8.1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실무 작업반의
내용 및 계획을
발표

6.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보험업계 설명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8월 26일 생·손보험회와 공동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 작업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설명회는 지난 '07.5월 출범된 『보험권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산하 실무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 진행된 작업 내용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 또한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향후 작업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1. 부채 부문의 주요 영향

1) 보험계약의 분류

- (현재)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는 모두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책임준비금을 적립
- (국제회계기준) 중요한 보험위험을 지닌 계약만 ‘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 보험료수익으로 인식(책임준비금 적립)하고, 저축성이 강한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되어 기타부채(예수금 적립)로 처리

☞ (도입영향) 보험회사 재무제표상 수익인식 금액 감소

2) 비상위험준비금의 부채 계상 금지

- (현재)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채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인정
- (국제회계기준) 지진 등 거대 손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부채 계상을 금지

- ☞ (도입영향)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환입되어 국내 손보사의 자기자본이 증가

3) 부채 적정성 평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보험업계 부채
및 자산에 영향

- ☐ (현재) 보험료 산출시점(Lock-in 방식)에서 적용한 기초율(예정이율, 예정위험률)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계상
- ☐ (국제회계기준) 평가시점(Lock-out 방식)의 기초율(예정이율, 예정위험률)을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평가
- ☞ (도입영향)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 가능성 존재

2. 자산 부문의 주요 영향

1) 대손충당금의 적립 방식 변경

- ☐ (현재)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회사의 경험율에 기초하되,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저 적립률 이상을 적립
- ☐ (국제회계기준) 회사의 경험율에 기초한 발생손실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총당금만을 인정
- ☞ (도입영향)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현행 기준에 의한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해 차액은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회사의 자기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부동산 등 유형자산 평가방법의 선택 적용

- ☐ (현재) 유형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만을 인정
- ☐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가법 또는 재평가법(시가평가) 중 하나를 선택 가능

국제회계기준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재무적 차이점
및 영향을
공시하도록 준비

☞ (도입영향) 보험회사가 재평가법을 선택할 경우 평가차익 발생 가능

3) 공시범위 확대

□ (현재)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련 정보 미 공시

□ (국제회계기준)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관리방법 및 리스크 평가 결과에 대해 내부 경영보고 수준의 내용을 공시토록 요구

☞ (도입영향) 회사의 공시범위(수준 및 양) 증가 예상

<국제회계기준 도입 작업 계획>

□ 국제회계기준 도입 1년 전 재무제표('10년)에 기존 회계정책과 국제회계기준간 주요 차이점 및 재무적 영향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 감독기구와 보험업계는 '11.3월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보험계리연금총괄팀, 생명보험서비스국 건전경영팀, 2008.8.26.

7.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공청회 개최

-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및 보험상품의 다양화 등으로 리스크중심의 예방적·선제적 감독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를
RBC제도로
전환을 추진

-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에서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동 제도는 선진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으로 미국('93), 일본('96), 호주('02), 영국('04)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 중임.

* RBC(Risk Based Capital)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 비교>

구분	지급여력제도	RBC제도(안)	차이점
분자	지급여력금액(①)	가용자본(①)	
분모	지급여력기준금액(②) - 보험리스크상당액 ·(생보)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 ·(손보) 보유보험료·발생 손해액 × 위험계수 - 자산운용리스크상당액 ·책임준비금 × 4%	요구자본(②) - 보험리스크 (생보)보험가격리스크 (손보)보험가격리스크 준비금리스크 - 시장리스크 - 신용리스크 - 금리리스크 - 운영리스크	- 보험리스크 정교화 - 시장·신용·금리 리스크 세분화 및 정교화 - 운영리스크 추가
산식	(①/②)×100	(①/②)×100	

관련 공청회를

통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

주 : RBC제도의 최종 요구자본은 리스크부문간 분산효과를 반영하여 계산

-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시안』에 대한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RBC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RBC제도 도입으로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리스크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되어 보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리스크제도실 보험팀, 생명서비스국 건전경영팀
2008.8.26.

8. 일반선박도 유류오염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최근 연안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손해보상제도를
정립

총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 피리트 사고 이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손해보상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 정책의 일환으로 해운선사 등 관련업·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9월 9~10일 양일간 개최
- 금번 워크숍에서는 유조선 이외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 피해 배상을 위한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년 11월 21일 국제 발효 됨에 따라 동 협약의 이행방안을 해운선사 등 관련업·단체에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차질 없이 외국항만에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임.
 - 이 법이 시행되면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 일정규모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만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할 수 있음.
 - 국적 선박 중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은 총 700여척으로 이중 636여척(90%이상)이 해당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톤수 1,000톤 초과하는 국적 및 외국적선박은 약 10만 9천척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였음.
- 국토해양부는 금번 워크숍을 통하여 수렴된 해운선사, 선주협회 등 관련업·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인 유류오염 배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자료 : 국토해양부 국제해사팀, 2008.9.9.

9. 보험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세제(稅制)

- ☐ 보험관련 세제(稅制)를 정리한 「보험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세제(稅制)」 소개를 통해 향후 보험가입시 보험소비자가 보험관련 세제(稅制)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상품의 완전판매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1.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종류

보험가입자에
대한 과세방식별
세제혜택을 제공

- ☐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방법과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제공
- 소득공제 :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함하여 소득세 과세시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
 - 보험차익비과세제도 :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토록 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2. 보험종류별 세제지원

-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시 100만원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요건>

- * 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
- * 피보험자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배우자, 기타가족(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사람)
- * 대상계약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 군인공제, 교원공제, 지방행정공제, 경찰공제, 소방공제

- 장애인전용보험
에 대해 추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또한, 장애인전용보험(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당해 연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 <장애인전용 보험료 소득공제 요건>**

* 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
 *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대상계약 :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

- 저축성보험 수령
금액 중 납입
보험료 초과
금액에 대해
비과세
- <저축성 보험>**
- ☐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융상품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
 - 보험계약일로부터 계약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인 경우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 한편, 이자소득으로 보는 보험차익은 일반적인 은행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만기보험금(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시 15.4%(소득세 14%+주민세 1.4%)를 원천징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구분	보험사고*시	만기시 보험차익	
보장성보험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 아님	
저축성보험		10년미만 유지시	이자소득세 과세
		10년이상 유지시	과세대상 아님

*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 상의 상해,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

- 연금저축금액
100% 소득공제
혜택 가능
- <연금보험>**
- ☐ 조세특례제한법(§86의2)에 따라 보험사,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저축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

<연금저축(세제적격)의 소득공제 요건>

연금저축 소득
공제는 매분기
3백만원 이내,
10년 이상 납입

- *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 * 저축기간 :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일 것
- *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
- * 지급조건 :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그러나, 연금저축(세제적격)의 경우 저축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해지금액(연금형태 외 지급액) 중 소득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22%를 원천징수)

- 또한,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외에도 납입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지불

3 상품별 세제지원

<생계형저축보험>

생계형저축보험
은 1인당
3천만원 내
적립보험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저축성 보험상품이 그 대상이며, 가입시 한과 저축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중도해지시(1년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가능

<생계형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

- * 가입대상 : 만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노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등
- * 대상상품 : 판매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상품
- *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
축보험은 분기별
3백만원 한도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인 세대주는 주택자금(총한도 1,0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일정 요건 충족시 납입액의 일부(40%)를 소득공제
- 또한, '09.12.31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 * 가입대상 : 가입 당시 만18세 이상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즉,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즉, 세대구성원 전원이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
- * 가입금액한도 : 분기별 300만원 한도(모든 금융기관에 가입 저축합계 기준)
- * 납입기간 : 7년 이상

- 한편, '07년말 세법 개정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
- 가입자가 동 저축보험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통보

*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생명보험팀, 2008.9.19.

10.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법률비용보험사
D.A.S. AG에서
법률비용보험(주)
의 보험업 영위
허가를 신청

- 금융위원회는 '08.9.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비용보험 중 법률비용보험 중 목, 자본금 150억원)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음.
- 법률비용보험이란 타인과의 법률적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한 비용-변호사 자문·선임비용, 소송진행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보상하는 보험
- D.A.S. 법률비용보험(주)은 Munich Re 보험그룹(獨)에 속한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78.3%를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임.

<D.A.S. AG 현황>

설립일자	1928.3.27.
대표이사	Rainer Toegel(라이너 퇴겔)
주요주주	Victoria AG(73%), ERGO Insurance Group AG(25%)
자기자본['07.12말]	3,268억원

- 향후 D.A.S. 법률비용보험(주)은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본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

- 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가 허가를 신청한 첫 사례이며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30개 중 14개*가 전업손해보험사임.

* 자동차보험(2개), 재보험(9개), 보증보험(1개), 권원보험(1개), 모기지보험(1개)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2008.9.26.

11.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 추진배경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증시불안
지속에 따른
공매도 규제준수
여부를 검사

- ☐ 정부는 최근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증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매도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공매도 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 ☐ 금번 검사 결과 공매도 확인의무, 호가 제한 등 현행 규제에 대한 위반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거래소·예탁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2. 최근 공매도 현황

- ☐ '08년 들어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매도가 크게 증가
 - o 6월까지 월평균 공매도 금액은 3.1조원으로 작년 월 평균 1.7조원에 비해 82.3% 증가했으며, 특히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2/4분기 이후 전체 거래금액 대비 공매도 규모가 빠르게 확대

<공매도 거래규모(유가증권시장 기준)>

구분	06년	07년	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9월
KOSPI (평균)	1,352	1,713	1,732	1,690	1,651	1,777	1,847	1,758	1,570	1,538	1,435	1,671
공매도 (조원)	9.5	21.1	3.9	2.0	3.0	3.2	3.3	3.4	4.5	4.0	3.9	31.3

최근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2/4분기 공매도
규모가 빠르게
확대 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3. 제도 개선 방안

(1)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강화

- ☐ 증권사가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2) 대차거래시 담보요건 강화

- ☐ 주식 대차시 담보요건을 강화하여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

(3)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

- ☐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도 초과시 일정한 냉각기간(cooling period)을 갖도록 함.

(4) 공시 강화

- ☐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4. 공매도 및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17조)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제9조의2) 개정을 통해 거래소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및 시장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10월부터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해
보다 다양한
요건을 강화할
예정

- o 상기 개정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차입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
- o 시장상황이 호전될 경우, 기발표(9.24)한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로의 이행 여부를 검토
- ※ ELW, ETF, 주식선물·옵션, 주식 자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의 시장조성행위 및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 인정

- ☐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투자기구·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1일 매수주문수량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승인을 거쳐 1일 매수주문 수량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음

※ 근거 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06조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70조,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의2

- 최근 증시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거래소에서 특례 인정을 위한 승인을 요청해 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함.

<1일 매수주문 수량 특례내용>

취득방법	현행제한	특례내용
직접취득시	• 신고주식수의 10%와 신고서 제출일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중 많은 수량 이내 • 다만, 그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	•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
간접투자기구	• 발행주식총수의 1%이내	• 간접투자재산 총액 범위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
특정금전신탁	• 발행주식총수의 1%이내	• 특정금전신탁자산총액 범위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

- 시행기간: 유가증권시장은 10.1일, 코스닥시장은 10.2일부터 08.12월말까지 시행하되,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고를 거쳐 연장 가능 (자기주식취득신고서 기재출법인도 특례 적용)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2008.9.24.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자산운용과, 2008.9.30.

해외제도 동향

1. 북미 동향

[美신용경색 위기로 다시 검토되는 美 금융규제개혁안]

1. 美정부의 금융규제개혁안에 대한 실효성 제기

□ 남북전쟁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미국의 금융규제개혁이 중추기관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게는 골치거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함.

○ 월스트리트 저널은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FRB를 ‘슈퍼 경찰’로 강화하는 방안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하버드대 경제학자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대단히 복잡한 복합파생금융상품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금융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아주 고급 인력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위험에서도 살아남으려 할 것인데 과연 FRB가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함.

□ 현재 은행 및 기타 금융권에 대한 감독은 각각 업종별로 나뉘어 있지만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FRB가 총체적인 감독권을 가지면서 하위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에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문제가 발견될 때 시정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하고자 함.

○ 지금까지 감독체계가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와 같은 체계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4가지 대안을 통해 검토한 결과 감독의 목적에 부합하는 감독체계를 갖추어 나가기로 결정함.

복잡한
복합파생금
융상품들을
관리·감독하
는 것은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전

업종별감독
이 아닌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감독체계
지향
(호주와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FRB는 타
규제기관과
협업하는
일이 발생

- FRB가 행사하고 있는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과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 기능에 전체 금융권에 대한 감독이 부가될 경우 기존의 은행권 감시감독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즉, 기존의 기능에 더불어 전체 금융기관을 감독하게 될 경우 은행권에 대한 FRB의 위기통제 능력이 필요한 순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월스트리트 저널은 폴슨 장관의 개혁안에 대해 FRB가 구조적인 위험을 인지할 경우 과연 어떠한 힘을 가질 수 있는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함.
- 즉, 은행에 대한 감독이 매일 이뤄지지 않는다면 은행으로 하여금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기에 앞서 다른 규제기관들과 협의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임.
- 하위 금융감독 기관이 과연 FRB의 지시에 순응하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FRB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감독권을 새로운 기관에 넘겨주고 감독기관에 대한 감독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논평함.

시장
만능주의에
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부기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형성

2. 美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

- 미국 재무부는 3월31일 감독체계의 중복 및 비효율성 해소와 자본 시장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의 3단계에 걸친 금융규제개혁안을 공표함.
- '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로 명명된 본 개혁안은 궁극적으로 은행과 보험,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단일 연방면허 감독체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음.

시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별감독하
다가
문제발생

- '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부의 감독기능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공화, 민주당의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임.
-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와 반발을 넘어 시장 감독체계 개편이 완성되기까지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음.
-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3.31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기능 강화와 모기지관리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의회에 제출함.
- 현재의 감독체계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쳐다보는 수준이라고 개혁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자본시장은 불가항력적인 시장 붕괴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감독시스템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별 감독기구 별로 관할 부문만을 파악하다보니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시각임.

< 단기 개혁안 >

연방준비제
도이사회(F
RB)의
비은행금융
기관 감독원
강

- 단기개혁안으로는 대통령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의 역할 확대, 주택담보대출위원회 설립(MOC: Mortgage organization commission),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비은행금융기관 감독권 강화 등을 제안함.
- PWG에 기존의 재무부와 FRB,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이외에 미 통화감독청(OCC: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artion), 저축기관감독청(OTS: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포함하며 조율대상을 개별 금융시장에서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대함.

- FRB, OCC, OTS, MOC, FDIC,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주법은행감독자협의회(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 등 6개 감독기관으로 주택담보대출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시장 진입 기준을 설정하고 각 주에서의 업무실태를 평가·감독하도록 함.

< 중기 개혁안 >

보험감독체
계개선안은
중기개혁안
에 속함

- 중기대책으로는 연방저축은행 면허 폐지, 주법은행(State-chartered Bank)의 연방규제 실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독권한 부여, 보험감독체계개선, 증권시장과 상품선물시장의 통합 등을 제안함.
- 연방예금보험에 가입된 주법은행이 연방준비제도 회원이면 FRB의 감독을 받고 아니면 FDIC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이원구조를 일원화함.
- 거액 및 소액, 증권 및 여타 금융상품 등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효율적인 단일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반 권한을 부여함.
- 현재 주면허로 설립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연방차원의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선택연방면허(OFC: Optional Federal Charter)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재무부 산하에 연방보험청(ONI: Office of national Insurance)과 보험감독청(OIO: Office of Insurance Oversight)을 설립함.
- 증권과 상품선물의 결합 또는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거래위원회를 통합하여 감독체계를 일원화함.

< 장기 개혁안 >

- 장기적으로는 은행, 보험,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FRB의 감독권한 부여, 공적투입자금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감독청(Prudential financial regulatory agency),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거래감독청(Conduct of business regulatory agency), 연방보험보증공사(Federal insurance guarantee Corp.), 기업재무감독위원회(Corporate finance regulator)의 설립 등을 제안함.
- 개혁안의 핵심은 FRB의 권한 강화로서 FRB에 감독 전권을 이양하여 기존의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에 전체 금융시장 안정화 기능을 추가하는 것임.
 - 거시경제 안정화는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기능으로서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임
 - 한편, 전체 금융시장 안정화는 감독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은행에만 국한 되지 않고 전체 금융시스템을 감시·감독하는 것임.
 - 연방 감독기구에 대한 감시·감독도 포함되는데 가칭 연방예금은행감독청(FIDI: Federal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연방보험감독청(FII: Federal Insurance Institution), 연방금융서비스감독청(FFSP: Federal Financial Services Provider)의 신설이 계획 중이며 이에 대한 총체적인 감독을 FRB가 가질 것으로 계획됨.

개혁안의
핵심은
FRB의
권한
강화로서
FRB에
감독
전권을
이양

3. 금융규제개혁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 찬성: 규제 합리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 >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
투자자들을
보호

□ 금융규제개혁안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판매가 원활치 못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경매방식채권(ARS)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됨.

□ 미국 지방채 시장 감독 기구인 지방채규제정책위원회(MSRB)는 신용위기로 크게 흔들리는 미국 지방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국 금융시장의 보증 체계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은행
저축기관
금융감독
구분폐지는
긍정적

○ 또 재무부 산하 지방저축기관 감독기관(OTS)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방금융 감독기관(OCC)에 넘겨 은행 및 저축기관간 금융감독 구분을 없애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이는 연방 및 지방 금융기관 감독의 일원화를 통해 동일한 기준 아래 일사불란한 금융감독이 가능해지기 때문임.

□ 미국 최대 저축은행인 허드슨 씨티뱅크의 로날드 허먼스 CEO는 “만약 신용 상태만 든든하다면 감독이 누구냐는 중요치 않다”고 밝혔음.

□ 현재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인식되는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감독기관 하나가 추가됐을 뿐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개혁안에 대한 반대는 없다는 입장임.

- 美펀드협회는 단일 감독체계에 편입될 경우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정치권 중 하원은 폴슨 장관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논평하면서 주택 차압과 경기후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인들을 위해 한 발 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반대: 금융비용 증가 우려 및 규제기관 전문성 상실 우려>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
금융비용이
높아질 것

- 투자은행들은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 금융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함.
- 은행들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FRB와 금융당국 등이 베어스턴스의 몰락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늘리라는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걱정함.
- 즉, 고위험·고수익 보장 차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대개 자본 1달러당 25달러 규모를 차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자본대비 부채규모는 모기지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무너졌던 칼라일 캐피탈과 비슷한 수치임.

통폐합대상
기관은
한목소리로
반대

- 미국은행연합회(ABA)도 “저축 금융기관 구분을 허무는 것은 미국 은행업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통폐합 대상 기관에서는 한 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함.
-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통합되어 거대기관으로 재탄생하면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까지 맡기도록해 SEC의 권한이 대폭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함.
- 아서 레빗 전 SEC 위원장은 “SEC로부터 많은 권한과 의무를 FRB로 넘겨준 방안”이라고 평가함.

〈 즉각적인 시행에 따른 논쟁〉

개혁안이
완성되려면
몇 년이
걸릴수도

-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구가 탄생하기까지 충분한 협의와 오랜 시간이 필요함.
- 1907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 FRB가 만들어지기까지는 6년이 필요했고, 1929년 대공황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SEC가 탄생하는데도 5년이 걸림.
- 이후에도 감독기구 개편안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의회와 월가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됨.
- 폴슨 장관 역시 이번 개혁안이 완성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

오히려
더욱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모럴해저드
발생 우려

- FRB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부기능을 부여할 경우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중앙은행의 대부기능을 안전판 삼아 금융회사들이 오히려 더욱 큰 위험을 감수하려 들 것이라는 게 대표적인 비판임.
- 감독기구 통폐합은 당사자들의 반발도 큼.
- 존 라이히 저축기관 감독청(OTS) 대표는 “OCC와 저축기관 감독청(OTS)통합이 쉽게 이뤄질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지난 60년간 유사한 논의가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고 밝힘.
- 금융감독 규제개혁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정치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함.
- 민주당은 공화당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입장임.

美민주당,
시장 전체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에만
감독기능을
확대할
경우실효성
저하

- 예를 들어 FRB의 감독기능 확대가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함.
- 민주당은 위험이 큰 모기지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월가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기준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폴슨장관의 개혁안이 원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 : 美재무부 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
Wall Street Journal 9/31

[미국 손보사 순이익 53% 감소]

Allstate사의
순이익
감소폭이
가장 커

- 최근 5개년 이후 최초로 발생한 보험영업손실로 인해 MBIA와 Allstate 등 3,000여개 손해보험사들의 2008년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350억 달러에서 53% 감소한 160억 달러로 나타났음.
- 원수보험료가 가격 인하로 인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2,213억에서 2,205억으로 감소한 반면, 손해액은 200억 달러(13.6%) 증가하여 전체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은 전년 상반기 157억 달러 흑자에서 금년 상반기 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음.
- 보험영업 부문뿐만 아니라 투자영업 부문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였음.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은 32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로 14% 감소하였으며, 보유 채권 가치는 0.2% 증가한 8,450억 달러로 2000년 채권 가치 감소 이후 최소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통주 가치도 3,460억 달러에서 3,260억 달러로 5.8% 감소하였음.
- Allstate Insurance 그룹의 일부인 Allstate의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5억 달러(61.5%) 감소하여 순이익이 가장 악화된 손해보험회사로 나타났음.
- Allstate는 미국 3위 보험회사로 순이익 감소는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양자의 손실로 인한 것임.
- Allstate그룹의 다른 자회사인 Allstate Texas Lloyds와 Allstate Fire and Casualty Insurance Co.는 텍사스주의 주요 Homeowners 보험회사로 양사의 보험영업이익은 금년 상반기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허리케인 Ike로 인한 손실액으로 적자로 반전되었음.

□ 모기지 보증보험사들의 보험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였음.

모기지
보증보험사
보험영업이익
대폭 감소

○ Ambac과 Municipal Bond Investment Assurance 그룹 소속 MBIA, PMI 그룹 소속 PMI Mortgage Insurance Co., Radian 그룹 소속 Radian Guaranty Inc., Collateral Holdings 그룹 소속 Triad Guaranty Insurance가 대표적인 모기지 보증보험사들임.

□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하락한 손해보험회사의 순위를 20위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 미국손해보험사 상반기 순이익 및 보험영업이익

회사명	신용 등급	순이익(손실)				보험영업이익(손실)			
		2008 상반기	2007 상반기	증가액 (\$백만)	증가율 (%)	2008 상반기	2007 상반기	증가액 (\$백만)	증가율 (%)
Allstate Ins Co	A+	935.7	2,431.7	(1,496.0)	-61.5	738.5	1,642.4	(903.9)	-55.0
MBIA Ins Corp	C	(699.5)	388.7	(1,088.2)	-279.9	(991.4)	253.5	(1,244.9)	-491.0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	B+	797.6	1,764.3	(966.7)	-54.8	(727.1)	593.1	(1,320.2)	-222.6
Ambac Assurance Corp	C	(460.9)	441.9	(902.8)	-204.8	(58.2)	359.8	(417.9)	-116.2
State Farm Fire & Cas Co	B	(404.1)	402.0	(806.1)	-200.5	(1,173.6)	39.9	(1,212.9)	-3,084.8
PMI Mortgage Ins Co	D	(578.6)	82.0	(660.5)	-806.0	(640.0)	59.8	(699.8)	-1,170.4
United Services Automobile Asn	A+	66.3	667.3	(601.0)	-90.1	(17.5)	294.6	(312.1)	-105.9
Everest Reinsurance Co	C-	89.3	682.1	(592.8)	-86.9	16.3	208.0	(191.8)	-92.2
Radian Guaranty Inc	D	(457.5)	115.6	(573.1)	-495.9	(491.9)	(11.1)	(480.8)	-4,343.2
Hartford Fire Ins Co	B+	324.4	846.0	(521.6)	-61.7	(141.4)	169.0	(27.6)	-16.3
Financial Secutity Asr Inc	B-	(408.1)	105.1	(508.2)	-483.7	(632.7)	63.4	(696.2)	-1,097.5
American Family Mut Ins Co	B	(434.7)	55.1	(489.8)	-889.0	(706.3)	(216.0)	(490.3)	-227.0
Factory Mutual Ins Co	C	(93.1)	394.7	(487.8)	-123.6	(292.0)	393.3	(685.3)	-174.2
Erie Ins Exchange	B	(10.5)	409.0	(419.6)	-102.6	(130.6)	245.4	(114.8)	-46.8
Cincinnati Ins Co	A-	(11.0)	388.2	(399.1)	-102.8	(4.5)	168.2	(172.7)	-102.7
Triad Guaranty Ins Corp	C	(314.8)	41.3	(356.0)	-862.9	(327.2)	31.0	(358.2)	-1,156.9
FSA Ins Co	C	(265.5)	44.5	(310.0)	-697.1	(367.8)	33.6	(401.4)	1,193.8
XL Capital Asr Inc	D	(276.9)	1.8	(278.7)	-15,240.5	(285.4)	(8.7)	(276.6)	-3,163.5
Farmers Ins Exchange	C	(105.2)	162.8	(268.0)	-164.6	(252.7)	20.0	(272.7)	-1,366.0
Mortgage Guaranty Ins Corp	C-	(136.2)	120.8	(257.0)	-212.8	(219.5)	(12.4)	(207.2)	-1,672.2

State Farm사의
실적 악화

□ State Farm 그룹의 경우 각각 미국에서 1위 및 11위를 차지하는 대형 보험자회사인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와 State Farm Fire and Casualty는 실적이 악화된 20대 보험기업에 포함되었음.

○ 또 다른 자회사인 State Farm Lloyds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텍사스주 최대의 주택소유주 보험회사인 동사도 금년 상반기 6,7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보험산업의
자본금 감소

□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의 전반적인 손실의 여파로 상반기말 보험산업의 자본금과 잉여금은 지난 6개년 이후 최초로 6,440억달러에서 6,380억 달러로 1% 감소하였음.

○ Berkshire-Hathaway그룹 소속 National Indemnity는 자본금이 363억 달러에서 331억 달러로 8.7%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음.

- 동사의 경우 미실현자본이익 35억 달러, 보험영업이익 8억 6,200만 달러, 순실현투자이익이 1억 3,500만 달러 각각 감소하였음.

○ Allstate는 자본금이 30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Cincinnati Financial 그룹의 일원인 Cincinnati Insurance, Swiss Re의 자회사인 Westport Insurance, XL Capital 그룹의 일원인 XL Capital Assurance Inc.의 자본금이 각각 10억 달러 감소하였음.

하반기에도
순이익 감소
예상

□ 경기 불황 외에도 3/4분기 증권시장의 침체가 당분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서의 손실이 2008년 하반기에도 지속되어 순이익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JournalThestreet.com, <http://www.cdn.thestreet.com>, 2008.9.30

2. EU 동향

<美신용경색 위기의 유로지역 금융시장 파급 영향과 대응>

1. 9월 미국발 신용경색 위기 이후의 유로 금융시장 변동

구제금융안
거부로
주가지수
폭락
유로화절하
리보금리
상승

-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9월30일 美하원의 구제금융안 거부로 인해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
 - 유로지역의 주가지수는 폭락하고 달러대비 유로화의 변동성이 커지며, 리보금리가 기록적으로 상승함.
- 유로지역의 주식시장은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15일부터 18일까지 급락하였고, 19일 FRB의 발표후 원점으로 급반등하였으며, 다시 30일 美하원의 구제금융안 거부안 발표 후 급락함.
 - 9월15~18일 기간 중 영국의 FTSE100지수는 9.9% 하락하였고, 독일의 DAX30지수는 6.0% 하락하였으며, 프랑스의 CAC40지수는 8.7% 하락함.

<표 1> 미국발 신용경색위기 이후 유로 금융시장 변동

	9/12	9/18	9/19	9/23	9/30
英 FTSE100	5,417	4,880 (-9.9%)	5,311 (8.8%)	5,136 (-3.3%)	4,819 (-6.2%)
獨 DAX30	6,235	5,863 (-6.0%)	6,143 (4.8%)	6,068 (-1.2%)	5,807 (-4.3%)
佛 CAC40	4,333	3,958 (-8.7%)	4,325 (9.3%)	4,139 (-4.3%)	3,953 (-4.5%)
리보(3개월)	2.82	3.2 (13.5%)	3.21 (0.3%)	3.21 (0.0%)	4.05 (26.1%)
달러/유로	1.4176	1.4392 (1.5%)	1.4385 (0.0%)	1.4731 (2.4%)	1.4082 (-4.4%)

주: ()는 전일대비 증가율

리보금리:
12~18일
13.5%↑
19일 0%↑
30일 26.2%↑

美달러대비
유로화:
15~18일
강세 19일
관망 23일
약세

- 19일 FRB의 지원대책 발표로 FTSE100은 8.8%, DAX30은 4.8%, CAC40은 9.3% 반등한 모습을 보이다가 美하원의 구제금융안 거부로 30일 다시 FTSE100은 9.3%, DAX30은 5.5%, CAC40은 8.6% 하락함.
- 금리는 14일과 30일의 발표로 대출상환 리스크가 높아지자 리보금리(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가 각각 기록적으로 인상됨.
 - 런던의 우량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에 활용되는 리보금리가 12일 2.82%에서 18일 3.2%로 13.5% 상승하였는데, 이는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임.
 - 그러나 19일의 발표 후 주식시장이 반등했던 것과는 대조되게 리보금리는 하락하지 않고 18일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19일의 FRB 시장개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은행들이 인식하는 자금거래간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30일의 美하원 구제금융법안 부결은 유로지역의 은행들에게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9월23일 대비 26.2% 상승하는 기록적인 증가를 보여줌.
- 외환시장은 14일의 리먼브라더스 파산후 美금융위기를 달러화의 약세로 인식하였으나 30일 美하원의 구제금융안 거부 발표는 오히려 유로화의 약세로 인식함.
 - 12일 이전까지 유로지역의 경기하강 기조로 인해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시현하던 유로화는 9월15~18일 달러화가 1.5% 평가절하됨.
 - 환율도 금리와 마찬가지로 19일의 발표 후 주식시장이 반등했던 것과는 대조되게 달러/유로화 환율은 18일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

- 외환시장은 19일의 FRB발표가 금융위기를 진화하기에는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23일까지 달러화의 약세가 더욱 커짐.

유로시장은
자기권역내
미국발신용
경색 영향이
예상보다
커짐을 인식

- 그러나 24일부터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리보금리는 치솟기 시작하여 30일 절정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미국발 신용경색의 영향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음을 시장에서 인식한 것으로 보임.
- 더불어 하반기 유로지역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경색 위기가 실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유로지역의 대응은 FRB와 공조하여 전방위적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으로 인한 유로지역의 직접 피해

리먼브라더스
파산 후
피해규모:
13개사대상
34억 7천만
유로 예상

-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과 메렐린치의 매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유동성 자금의 부족현상이 나타남.
- 유로지역 주요국 금융기관들이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노출규모를 발표하였는데 그 추정액은 13개 기관에 약 34억 7천만 유로(약 49억 3천만 달러) 규모임.
- 또한 2008년 4월 IMF가 발표한 “Regional Economic Outlook: Europe”에 따르면 유럽은행들이 보유한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관련 자산은 약 2,790억 달러로, 약 7,000억 달러의 전체 규모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리먼브라더스 파산 보호신청 이후 유로지역 금융기관 예상 피해액

유럽은행,
미국전체
비우량담보
대출의
40% 차지

금융기관	해당국가	노출규모
S o c i é t é Générale	프랑스	4억 7,900만 유로(8억 7,200만 달러)
BNP Paribas	프랑스	4억 유로(5억 5,600만 달러)
AXA	프랑스	3억 유로(4억 2,700만 달러)
Credit Agricole	프랑스	2000만 유로 미만
Dexia	벨기에	5억 유로(6억 8,900만 달러)
KBC Groep	벨기에	4억 8,000만 유로(6억 8,050만 달러)
Aegon	네덜란드	2억 6,500만 유로(3억 7,600만 달러)
Fortis	네덜란드 벨기에	1억 3,700만 유로
Allianz	독일	4억 유로(5억 6,900만 달러)
Munich Re	독일	3억 5,00만 유로(4억 9,800만 달러)
Aviva	영국	1억 1,00만 유로
Swed Bank AB	스웨덴	2,650만 유로(3,770만 달러)
B a n c o Santander	스페인	5,560만 유로(7,900만 달러)
계		약 34억 7천만 유로(약 49억 3천만 달러)

출처 : DJ Newswires, DOWJONES Financial Times, Factiva

3) 유로지역 주요국의 대응 및 美FRB와의 공조체계 구축

- ☐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15~16일 유로지역의 금융시장의 동요를 억제하기 위해 약 1,000억 유로의 단기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함.

- 리먼브라더스 파산 보호신청과 Bank of America의 메릴린치 인수 인수가 발표된 9월 15일 ECB는 300억 유로(약 427억 달러)의 유동성을 overnight loan*을 통해 금융시장에 공급함.

* overnight loan은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간에 거래되는 단기자금 대차인 call loan의 하나로서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한 금융기관은 외국 또는 국내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일 초단기 외화자금을 빌리게 되는데 이를 말함.

- AIG도 유동성위기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9월16일 ECB는 추가적으로 700억 유로(약 1,000억 달러)를 금융시장에 공급함.

- 9월18~26일까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를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美달러 단기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함.

FOMC,
9월18일
통화스왑으로
유로은행 등에
2,470억 달러
공급 결정

〈 FRB와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대처 경과 〉

- ① 9월18일 FRB의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5개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1,80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추가 승인하여 총액 2,47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함.

- 새롭게 결정된 모든 통화스왑은 2009년 1월 30일이 만료 예정임.

* 통화스왑(currency swap)은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간 신용계약을 말함.

- ECB는 통화스왑을 통해 기존의 통화스왑 라인을 550억 달러 증가시켜 1,100억 달러까지 유동성을 공급받음.

- 스위스은행도 이번 결정을 통해 기존의 통화스왑 라인을 150억 달러 증가시켜 총 27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받음.
- 일본은행, 영란은행, 캐나다는 이번 결정으로 통화스왑라인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일본은행은 600억 달러, 영란은행은 400억 달러, 캐나다는 100억 달러의 달러 유동성을 공급받음.

FOMC,
9월24일
통화스왑으로
유로은행등에
2,770억 달러
공급

- ② 9월24일 FRB의 FOMC는 4개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추가 승인하여 24일 현재까지 총액 2,77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함.
 - FOMC는 300억 달러 규모의 상호담보 통화스왑을 발행하여 4개 국 중앙은행에 유동성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함.
 - FOMC는 호주은행과 스웨덴은행에 각각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라인을 개설하여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함.
 - FOMC는 덴마크은행과 노르웨이은행에 각각 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라인을 개설하여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함.

FOMC,
9월26일
통화스왑으로
유로은행등에
2,900억 달러
공급

- ③ 9월26일 FRB의 FOMC는 2개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13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추가 승인하여 26일 현재까지 총액 2,90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함.
 - 26일 FOMC는 ECB에 100억 달러 규모의 상호담보 통화스왑을 추가 발행하여 총 1,2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함.
 - 26일 FOMC는 스위스은행에 30억 달러 규모의 상호담보 통화스왑을 추가 발행하여 ECB에 총 3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함.

FOMC,
9월29일
통화스왑으로
유로은행
등에 62,00억
달러 공급

- ④ 9월29일 FRB의 FOMC는 주요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달러 통화스왑을 추가 승인하여 29일 현재까지 총 6,20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
- 이번 결정에는 통화스왑의 만료일을 2009년 1월 30일에서 2009년 4월30일로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됨.
 - 29일 FOMC는 ECB에 26일 결정된 1,2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담보 통화스왑라인을 두 배로 증가시켜 총 2,400억 달러의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29일의 FOMC 결정으로 캐나다는행은 200억 달러가 증가한 총 300억 달러, 영란은행은 400억 달러가 증가한 총 800억 달러, 일본은행은 600억 달러가 증가한 총 1,200억 달러, 스위스은행 역시 300억 달러가 증가한 총 600억 달러의 단기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게 됨.
 - 한편 FOMC는 호주은행과 스웨덴 은행에도 각각 200억 달러를 추가 공급하여 각각 총 3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덴마크은행과 노르웨이은행에 각각 100억 달러의 통화스왑 라인을 증가시켜 각각 총 150억 달러의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26일 결정된 2,900억 달러의 통화스왑라인이 불과 며칠 후 29일 유럽을 중심으로 6,200 달러로 증가한 것은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반영함.
- 정황상 19일의 통화스왑라인 결정은 FRB의 주도로 결정된 것인데 반해 24, 26, 29일의 연속된 추가라인 설정은 유로지역의 요청으로 주도된 것으로 추측됨.
-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사실은 미국발 신용경색의 유로지역 파급이 예상 밖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음.

9월18일
영국최대
모기지업체
HBOS
로이즈은행에
매각

- 리먼브라더스 파산 보호신청 이후 영국 최대모기지 은행인 HBOS의 위기 가능성이 부각되자 영국 당국의 중재를 거쳐 로이즈은행(Lloyds TSB)이 HBOS를 인수함.
- 9월18일 영국의 최대 모기지업체인 할리팩스스코틀랜드(HBOS: Halifax Bank of Scotland)은행은 로이즈은행에 전격 매각되었으며, HBOS의 매각가는 122억 파운드(주당 232펜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에딘버러(Edinburgh)에 거점을 두고 있는 HBOS은행은 영국의 주택시장 침체 및 모기지 시장의 불황으로 런던 금융가에서는 파산 1순위로 지목되어 왔음.
- 또한, HBOS는 자산의 상당부분이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와 연계되어 있어 리먼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고스란히 그 손실을 떠안을 처지로 전락하면서 전격적인 매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남.
- HBOS는 영국 모기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3,350억 파운드 규모의 주택대출시장 영업을 영위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 세전수익이 14억 5,100만 파운드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하는 등 경영 위기를 겪어 왔음.
- HBOS의 주가는 17일까지 6일 동안 308.5펜스에서 88.0펜스까지 떨어지는 등 절반 이상이 떨어졌으며, 국제 신용평가사 Fitch와 S&P는 9월16일 HBOS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 HBOS와 로이즈는 이 같은 합병을 통해 2,300만명이 넘는 고객을 관리하는 영국 최대 저축은행(영국모기지 시장 28%를 차지)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임.

9월17일
영란은행
유동성지원
특별프로그램
연장

- 영란은행은 9월17일 은행권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유동성지원 특별 프로그램(SLS)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 SLS는 영란은행이 2008년 4월 발표한 정책으로 시중은행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산을 영국 재무부 채권과 바꿀 수 있게 됨.
 - 본 프로그램의 만료는 2008년 10월 까지로 예정되었으나 리먼브라더스, AIG 등 미국 금융기관의 위기가 재발하자 영란은행은 SLS를 2009년 1월 30일까지 연장함.

영국 금융청
9월18일부터
공매제도금지

- 영국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9월 18일부터 공매제도를 금지함.
 - 공매도란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팔거나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파는 것을 일컬으며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 교란과 증시불안을 막기 위해 취해짐.
 - 공매도 금지조치는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이후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국내에서도 한시적으로 시행됨.

*자료: FRB 및 주요국 중앙은행
보험연구원 해외보험동향 9월29일
영국 금융청(FSA)
DJ Newswires, DOWJONES Financial Times, Factiva

3. 일본 동향

[일본 보험감독지침 일부 개정]

1. 개정 배경

일본
금융청은
보험감독지침
을 일부 개정

- 2008년 8월 28일 일본 금융청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保険業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案))」 및 「보험회사 전용 종합적인 감독지침의 일부 개정안(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の一部改正(案))」을 공포함.
- 금융청 내 금융심의회의 ‘보험의 기본문제에 관한 워킹그룹’에서는 친권자에 의해 피보험자 동의가 행해지는 미성년자의 사망과 관련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도덕적 위험이 높은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음.
- 또한 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반드시 취득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한도액 이외의 보험 인수에 관한 사내규칙 등을 정하는 것과 해당 사내규칙 등에 근거하여 업무가 운영되도록 충분한 체제정비의 구축을 요구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함.

보험금
한도액 외
보험금 책정
사내규칙으로
명문화

2. 개정법 주요 내용

- 보험금 사기 등을 막기 위해 보험금 한도액 이외에 따로 보험금을 책정하는 문제는 사내 규칙으로 명문화하도록 하고, 해당 사내규칙 등에 근거하여 업무가 운영되도록 충분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내각부령으로 의무화함.

- 대상보험은 ①15세미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②피보험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망보험이며 단, 이들 중에서도 부정한 이용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됨.
- ‘사망보험’이란 사람의 사망에 관계되어 일정액수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收受)하는 보험을 말함.
- 아울러 상기 내각부령의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전용 종합적인 감독지침」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정을 실시함.
- 연내에 입안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하도록 함.

3. 실제 개정 사항

- 보험법시행령규칙의 사내규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의 7 제2항을 신설함.

<표 1> 개정 보험법 제53조 7 제2항 전문

보험법시행령규
칙 제53조 7
제2항 신설

2. 보험회사가 사람의 사망과 관련해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거나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것(모두 부정한 이용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를 ‘사망보험’이라 한다)의 인수를 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사내규칙 등에 사망보험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금의 한도액 이외 인수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자료 :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보험회사
감독지침 일부
소항목 신설

- 보험회사 전용의 종합적인 감독지침의 ‘II-3-5-1-2 법제100조의 2에 규정하는 업무운용에 관한 조치 등’ (14)-②의 일부 소항목과 ③항목을 신설함.

<표 2> 개정 보험법 법제100조 2 전문

- イ. 사망보험(규칙 제53조의 7 제2항에 규정하는 사망보험을 말함)의 인수에 대하여
- (ア) 보험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망보험과 관련되는 보험금의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것을 넘는 보험금액에 의한 보험의 인수를 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가. 또 이 한도액은, (사)생명보험협회의「계약내용등록제도·계약내용조회제도」또는 (사)일본손해보험협회의「계약내용등록제도」등(이하「계약내용등록제도등」이라고 총칭함)의 조회결과를 근거로 하여 동일 피보험자의 다른 사망보험과 관련되는 보험금액과 합산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가.
- (イ) 이외, 보험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 니즈의 확인 등을 통해서 적절한 인수 심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가.
- ③ 보험금의 한도액을 사내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한도액 이내에서 보험이 인수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또한, 보험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인수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가.

자료 :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4) 보험업법 일부개정 사전평가서 요지¹⁾

보험법
개정논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전평가서 공개

- 금융청은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내부논의를 정리한 사전 평가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되도록 함.
- 사전 평가서는 개정법안에 대해 정책평가를 내리면서 행정비용을 제외하면 피보험자 보호에 의한 편익은 규제 도입 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함.

1) 金融庁, “規制の事前評価書”, 2008. 8.28

<표 3> 법규 사전평가서 요지

정책명칭	15세미만인 자 또는 동의가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인수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금융청 총무기획국 기획과 보험기획실	
평가시기	2008년8월27일	
규제목적	('상기 (1) 개정배경' 참조)	
규제내용	상정안	- 사망보험 가운데,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자를 보험회사가 알을 때, 보험의 부정한 이용의 방식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금의 한도액 이외 인수에 관한 사내규칙 등을 정함과 동시에, 해당 사내 규칙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운영하는 체제의 정비를 보험회사에 의무화함.
	대체안	- 15세 미만인 자 또는 스스로 동의가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모든 사망보험과 관련되는 보험금의 한도액에 대해서, 내각부령에 있어 피보험자 보호의 목적에 맞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함.
비용/ 편익	준수비용	- 사내원칙 등의 책정 및 이에 기초한 체제 정비를 위한 비용이 발생함.
	행정비용	- 책정된 사내규제 및 정비된 체제에 대한 감독·검사비용이 발생함.
	기타 사회적 비용	- 보험상품의 성격과 니즈에 따라 보험금 한도액 설정이 보다 치밀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적음.
	규제의 편익	- 보험의 부정한 이용에 의해 피보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우려가 감소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보호가 증진됨.
정책 평가 결과	비용/ 편익 분석	- 행정비용을 제외하면 모두 규제 도입 초기에만 현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피보험자 보호에 의한 편익은 규제 도입 후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대체안과 비교	- 대체안에 따라 보험금 한도액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그 규제의 정도 등에 대해 국민 전체의 의견 일치를 얻는 것이 어려우며, 준수 비용, 행정비용도 더욱 증대될 것이어서 대체안을 채용하기는 어려움.

자료: 金融庁, “規制の事前評価書”, 2008. 8.28

- * 자료 : 金融庁, “保険業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案)”, 2008. 8.28
 金融庁,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の一部改正(案)”, 2008.8.28
 金融庁, “規制の事前評価書”, 2008. 8.28

개정법 시행으로
편익 증대 효과
기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일본 금융청 동향]

1) 기자회견 배경 및 의미

□ 이토 타츠야(伊藤達也) 금융청장관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 금융당국의 공식 브리핑을 가짐.

금융청장관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 금융당국의
입장을 공식
발표

- 9월 18일 금융청회견실(金融庁会見室)에서 있었던 이번 기자회견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기본인식과 일본 금융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관해 책임있는 당국자가 밝힌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주목을 받음.
- 약 30분간 있었던 이번 기자회견은 크게 AIG 사태, 일본 내 금융기관들의 대출거부 문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동 협력 문제, CDS 거래 문제 등 4개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루어짐.

2) AIG 사태

□ 미국 정부가 AIG 구제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사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해석함.

미국 정부가
제시한 AIG
구제책
긍정적으로 평가

-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최고 850억 달러를 융자하기로 결정한 것과 미국 연방정부가 AIG 지분을 79.9%를 인수해 사실상 국유화 조치한 점은 AIG 파산으로 인한 세계 금융자본의 유동성 우려를 조기에 잠재웠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한 조치임.
- 일본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총 7개 AIG 그룹 보험회사들은 자회사 또는 지점 형태로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금융청은 향후에도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업무의 적절성 및 재무 건전성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임.

- 일본 보험업법상으로 일본 내에서 인수한 보험계약에 대해 외국 보험회사라고 해도 법으로 정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놓아야 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보험 계약자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금융청의 설명임.

3) 일본 내 금융기관들의 대출거부 문제

- 미국 금융불안으로 일본 내 금융기관들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금융청은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음.

금융기관들의
대출조건
상황으로
중소기업
자금경색 해결책
마련

- 9월 17일 긴급 소집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후쿠다 총리의 우려대로 그동안 약세였던 일본 경제가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함.
- 특히 중소기업의 현실은 더욱 좋지 않아 민간 금융기관의 적절하면서도 적극적인 금융 중개기능의 발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금융청은 중소기업이 원활한 금융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가지 기본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함.

<표 1>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일본 금융청의 기본 정책

1. 치밀한 실태 파악과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를 위한 감시
2. 금융기관 등을 통해 금융 원활화 움직임 제고
3. 실태를 밝은 적절한 검사·감독

자료 : 金融庁, “佐藤金融庁長官記者会見の概要”, 2008.9.18

-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지방으로의 간부파견과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설한 이른바 ‘금융원활화 핫라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치밀한 실태파악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상공회의소가 주도가 되어 앙케이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지역의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중소기업 금융실태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원활화 핫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계 부처와 기관들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예정임.

4)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 문제

- 금융경색이 지속되면서 달러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청은 일본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와 600억 달러 규모의 스왑(swap)협정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서도 공식 해명함.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세계
중앙은행들과의
스왑협정은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

- 일본, 미국 및 주요 유럽 중앙은행들은 현재 금융시장 혼란은 달러 유동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례적으로 1,800억 달러 규모의 스왑달러 협정을 체결²⁾하는 등 긴장의 주요 원인을 잠재우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음.
- 금융청은 이번 일본은행 조치가 글로벌 금융시장 뿐 아니라 일본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금융시장 기능의 유지 및 안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2) Get Chicago Tribune, “Federal Reserve, other central banks to pump billions more dollars into money markets” , 2008.9.18

금융감독 당국간
국제제휴 중요성
증대

- 금융 감독의 면에서도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일본은행과 금융 감독국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국제사회와의 협조 및 제휴, 그리고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현재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독기관이 이전보다 외국 감독당국들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임.

5) CDS 거래 문제

CDS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

-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과 AIG의 긴급 공적자금 투입 조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CDS(신용디폴트스왑) 일본 내 거래실태 및 감독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함.
-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활성화된 CDS 거래는 시스템 리스크*가 매우 커서 미국 당국이 사후 아무리 적절한 대응을 했어도 한계가 있었음.
 - *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금융기관이 경영파탄에 빠져 결제 불능이 되었을 때 그것이 도미노현상처럼 연이어 다른 곳으로 파급되는 리스크를 말함³⁾.
- 일본 내에서도 최근 몇 년동안 CDS가 신용리스크의 헤지 수단으로써 사용되면서 CDS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왔는데, 금융기관들의 신용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신용리스크 매니지먼트 수단으로서 CDS가 순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청의 기본 인식임.

3) FRB, "Ben S. Bernanke Speech 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s Annual Economic Symposium- Reducing Systemic Risk", 2008.9.22

- 대량의 익스포저(exposure)를 안게 되면 리스크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 당국은 파생금융상품 거래 시장의 확대라는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민간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함.

★ 자료 : 金融庁, “佐藤金融庁長官記者会見の概要”, 2008.9.18
Get Chicago Tribune, "Federal Reserve, other central banks to pump billions more dollars into money markets" , 2008.9.18
FRB, "Ben S. Bernanke Speech 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s Annual Economic Symposium-Reducing Systemic Risk", 2008.9.22

4. 기타 동향

[중국 개정 보험법 주요 내용]

1) 보험법 제정 및 개정 역사

중국
보험법은
1995년 처음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총
두차례 개정

- 중국 보험법은 1995년 처음 제정된 이후 이번 개정을 포함해 총 두 차례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짐¹⁾.
 - 제 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 상무 회의의 논의를 거쳐 1995년 6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이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정식 시행되었음.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보험업계의 보험법 개정 요구에 따라 2002년 10월 제1차 수정 보험업법이 전인대에서 입법통과 되었고, 이듬해 2003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음.

2) 현행 보험법 개정 경과

보험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

- 이번 보험법 개정을 위해서 중국 정부는 많은 공청회 개최와 보험법 개정 관련 전용 홈페이지(www.npc.gov.cn) 오픈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2004년 10월부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독위)와 국무원 법제청을 주축으로 2차 보험법 개정작업을 시작해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수정 초안(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修订草案)>을 완성함.
 - 올해 8월 25일~29일에 개최되었던 제11차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보험법 수정 초안이 심의되어 통과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늦어도 올해 안에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수정 보험법을 최종 공포할 예정임²⁾.

1) 保险法修订 홈페이지, “我国保险法颁布及两次修改的历程”, 2008.8.26

2) 保险法修订 홈페이지, “保险法修订草案等三部法律草案公开征求意见”, 2008.8.29

-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정부 관계기관 뿐 아니라 법원, 지방정부, 대학, 보험관련 기관 및 민간 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약 50여 개 기관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보험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³⁾.

3) 보험법 개정 배경

- 최초 보험법 제정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 보험산업 개혁 및 금융 시스템 확립 등 21세기 중국 보험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는 새로운 보험업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중국 보험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대대적인
개정이 요구된
보험법

- 작년 중국 전체 보험수익은 약 7,035억 위엔(약 116조원), 100여 개 보험회사들의 총자산은 약 3조억 위엔(약 495조원)에 달할 만큼 크게 성장해 이에 걸맞는 대폭 수정된 보험업법이 필요함⁴⁾.
- 기존 보험법이 담고 있는 기구조직 및 형태에 관한 내용으로는 오늘날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품종류와 각종 관련 조직들(예: 보험중개서비스기관)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험영업 활동 및 영업활동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역점을 두는 한편, 보험감독기구의 권한과 감독수단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리 및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김.
- 금융업계가 종합 경영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의 업무 범위를 적정 수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정부와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됨.

3) 保险法修订 홈페이지, “关于《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修订草案)》的说明”, 2008.8.29

4) 保险法修订 홈페이지, “中国人大网保险法修订的必要性和主要内容”, 2008.8.26

4) 개정 보험법 구성

- 보험법 개정 초안은 총 10장 19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업협회’와 ‘보험감독관리기구’ 등 2개의 장이 신설됨.

<표 1> 중국 보험법 개정안 목차

개정 보험법은
2개 장이
신설되어 총
10장 194조로
구성

제 1장. 총칙
제 2장. 보험 계약
- 제 1절. 일반규정
- 제 2절. 재산보험 계약
- 제 3절. 생명보험 계약
제 3장. 보험회사
제 4장. 보험영업 규칙
제 5장. 보험업 관리감독
제 6장. 보험대리인, 보험관리사 및 보험평가기구
제 7장. 보험업협회*
제 8장. 보험감독관리기구*
제 9장. 법률책임
제 10장. 부칙

주 : 제 7~8장은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임.

자료 : 保险法修订 홈페이지, “保险法修订草案全文及说明”, 2008.8.29

보험사
업무범위와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

(5) 개정 보험법 주요 내용

- 보험사의 업무 및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함.
- 2007년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자금은 2000년의 10.5배 수준인 약 2조 7천억 위엔(약 440조원)⁵⁾(GDP의 약 11%⁶⁾)에 달할 만큼 중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투자기관으로 성장함.

5) 第一财经日报, “保险法修订四大看点: 再保变局, 投资拓宽, 偿付监管, 金融混业”, 2008.8.26

6) 中国经济时报, “论此轮《保险法》修订的六大节点”, 2008.9.11

- 현재까지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재보험, 기업재산 보험만 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은행예금, 국채, 금융채 뿐 만 아니라 기업채, 회사채, 증권, 투자펀드 등 유가증권으로 운용범위가 확대됨.
 - 연금관리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정도 명시하여 투자처를 다양화 함.
- 보험활동
당사자의
의무 명시와
피보험자
권익보호에
노력
- 보험활동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피보험자 권익보호를 강화함.
 - 개정 보험법은 보험계약 성립시간, 보상절차 및 보상기한 등을 명기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계약자의 착오, 허위진술 등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규정한 불가쟁조항(不可抗辯條款)⁷⁾을 신설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이익 보호에 만전을 기함.
- 지불능력과
보험요율
관리감독을
강화
- 지불능력과 보험요율 관리감독을 강화함.
 - 보험회사가 지불능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본금 증자, 신규업무금지, 불량자산매각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있고 업무범위, 주주배당, 관리자급여, 분점 및 지점증설 등에 제한조치는 물론 정도가 심할 경우 보감위가 회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법 요소가 있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가격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사간 악성경쟁과 지불능력 악화를 예방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금융경영을
허용
- 보험업의 금융경영을 허용함.
 - 보험회사는 현행 보험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기업연금 신탁관리업무, 제3자 관리형 건강보험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또한 정부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종합경영 시범사업으로 금융업종간 상호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금융그룹은 자회사 형태로 은행, 증권, 보험업을 사실상 겸하고 있는 상황임.
- 개정 보험법에는 보험회사의 영업범위가 금융업 겸업으로 확대되어 정부주도의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금융체제 개혁을 시행하는데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됨.
- 중국 상업은행법, 증권법은 물론 외국의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보험회사가 연기금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험관련 기타 유관업무’도 포함시킴.

□ 국내 재보험사 우선가입 규정을 폐지함.

중국
재보험사
우선가입
규정 폐지

- 중국 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는 재보험 가입 시 중국 재보험사에 우선 가입하도록 한 현행 보험법 103조, 104조 규정이 삭제됨.
- WTO에 가입시 2006년 말까지 재보험 시장의 완전자유화를 이루겠다고 한 약속을 준수하고 글로벌 시장 질서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임.
- 이번 보험법 개정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국내보험회사가 보험가입 금액의 20% 이상을 반드시 국내 재보험사에 가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국에 진출한 뮌헨리, 스위스리, 제너럴 재보험회사 등의 외국계 재보험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상황임.

□ 보험중개관리를 현실화함.

보험중개관리를
현실화

- 보험중개기관의 자본, 인력, 경영원칙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보험겸업대리의 법률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전문 보험대리인과 개인 보험대리인을 법률적으로 구분함.

7) 中國保險報, “保險法新增訂不可抗辯條款存在的問題”, 2008.9.1

- 개인 보험대리인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 보험대리인의 보험대리업무 및 영업 허가증 취득, 상공등록 처리, 보증금 예치, 보험계약자 직업 책임보험 등 그동안 존치되던 규정들을 모두 수정·삭제함.
- 보험회사의 주주 및 임원관리를 강화함.
 -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과 신망이 있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사실이 없어야 함은 물론 보유재산이 최소 2 억 위엔(약 33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주주 요건을 까다롭게 함.
 - 임원이 범법을 저질렀을 경우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보험회사 임원 및 감사, 고급관리가 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신설함.
- 보험업협회 관련 조항을 새로 명시함.
 - 역할 및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보험업협회(保险行业协会) 조항을 신설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 함.
 - 현행 보험법은 보험업의 자율조직인 보험업협회에 보험회사들만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 보험법은 보험대리인, 보험관리사, 보험평가기 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주주 및 임원
관리감독을
강화

보험업협회
관련 조항을
신설

*자료 : 保险法修订 홈페이지, “我国保险法颁布及两次修改的历程”, 2008.8.26
 保险法修订 홈페이지, “保险法修订草案等三部法律草案公开征求意见”, 2008.8.29
 保险法修订 홈페이지, “关于《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 (修订草案)》的说明”, 2008.8.29
 保险法修订 홈페이지, “中国人大网保险法修订的必要性和主要内容”, 2008.8.26
 第一财经日报, “保险法修订四大看点: 再保变局, 投资拓宽, 偿付监管, 金融混业”, 2008.8.26
 中国经济时报, “论此轮《保险法》修订的六大节点”, 2008.9.11
 中国经济时报, “保险法修订草案相关变化”, 2008.8.26
 中国保险报, “保险法新增订不可抗辩条款存在的问题”, 2008.9.1

[중국 상장회사 인수 관리방법 개정]

상장회사 인수
관리방법을
개정

-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는 8월 27일 <상장회사 인수 관리방법 제 63조 개정에 관한 결정(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第六十三条的决定)>을 발표하고 9월 1일 발효함.

1. 개정법안 주요내용

대주주 공개
매수 면제
신청을
사후제로 변경

- 대주주의 공개 매수 면제 신청 방법을 현행 ‘사전제’에서 ‘사후제’로 변경함.

- 주주가 보유한 한 상장회사의 지분이 해당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이상이고, 이러한 사실이 일어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2개월 내 매입한 회사지분이 해당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는 매입 전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던 규정을 매입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증감회
면제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

- 증감회의 면제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함.
- 해당회사는 지분 매입 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매입 현황을 공시하고 증감회에 면제 신청을 하면 증감회는 신청을 접수일로부터 10업무일(이전에는 5업무일) 안에 면제 여부를 결정함.

2. 개정법안 관련 법규⁸⁾

- 증감회는 대주주의 공개 매수를 사후신청으로 바꾸면서 다음의 증권법 및 상장인수 관리법 조항 준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8)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关于修改〈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第六十三条的决定(征求意见稿) 答记者问”, 2008.8.17

<표 1> 대주주의 공개 매수 사후신청 시 전제되는 법조항

해당 조항		상세 내용	
개정법을 관련 법조항	47조	- 상장회사 5% 이상 주식을 소지한 주주가 해당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6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매각 후 6개월 내에 다시 매입하는 경우	
	73조	- 증권거래 내부정보를 속지한 자와 내부정보를 불법 취득한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	
	77조	증권 시장 조종 금지	- 단독 내지는 공모하여 자금 우세 또는 지분 소지 우세를 집중하거나 또는 정보 우세를 이용하여 연합하거나 연속 매매로 증권거래가격 또는 증권거래수량을 조종하는 방법
			- 타인과 내통하여 사전에 약정한 일시, 가격과 방식으로 상호 간에 증권거래를 하여 증권거래가격이나 증권거래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 자체 실제 통제하는 계좌 사이에 증권거래를 진행하여 증권거래가격이나 증권거래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 증권시장을 조종하는 기타 방법			
상장 인수 관리법	6조	- 현금,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증권 및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지불방식을 통해 진행	

자료 : 중국 <证券法> 및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전문(全文)에서 발췌

- 이번 개정법률을 위반했을 시 증감회는 다음과 같은 법규정을 근거하여 강도높은 처벌을 확약함.

<표 2> 개정법을 위반 시 처벌 관련 증권법 조항

개정법을
위반시 처벌
관련 증권법
조항

해당 조항	상세 내용
195조	- 상장회사의 5% 이상 주식을 소지한 주주가 본 법 제 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회사 주식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경고를 주고 3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02조	- 법 73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시 불법 소지 주식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3만 위엔 이하일 경우에는 3만 위엔 이상, 6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불법 뒷거래를 한 주관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를 하고 3만 위엔 이상, 3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03조	- 증권시장을 조종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불법 소지 주식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30만 위엔 이하일 경우에는 30만 위엔 이상, 30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단위가 증권시장을 조종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를 하고 10만 위엔 이상, 6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자료 : 중국 <证券法> 전문(全文)에서 발췌

3) 법개정의 배경 및 기대 효과

□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관리감독 규범들을 적극 반영함.

세계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범 반영

- 상장기업의 주주들이 지분 매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은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일반화 됨.
- 면제 신청을 사전에서 사후로 변경해 상장회사 지배주주의 주식 매입에 융통성이 커짐.
- 상장회사의 자본 시장화에 도움이 되고 지배주주의 지분매입 융통성이 확대되어 상장회사의 공신력 향상이 기대됨.
- 주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지분확대 행위가 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특히 증감위가 범위만 시 엄격한 법집행을 약속함으로써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关于修改〈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第六十三条的决定》(征求意见稿) 答记者问”, 2008.8.17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全文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证券法〉全文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6		CY2007				CY2008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5.0	4.2	4.0	4.9	5.1	5.9	5.8	4.8
경상수지		1,017	6,111	-1,662	34.4	4,430	3,152	-5,213	-134
수 출		82,713	87,394	84,704	92,984	90,529	103,172	99,468	114,536
수 입		80,216	79,905	82,262	87,962	86,059	100,563	105,937	114,410
실업률		3.3	3.2	3.6	3.2	3.1	3.0	3.4	3.1
금리	국고채(3년)	4.69	4.82	4.79	5.24	5.39	5.89	5.10	5.9
	회사채(3년)	5.02	5.18	5.20	5.64	5.85	6.73	6.01	6.9
소비자물가지수		102.9	102.6	103.5	104.6	105.3	106.0	107.4	109.6
환율	원/달러	945.2	929.6	940.3	926.8	920.7	938.2	991.7	1,043.4
	원/엔화	802.2	781.8	797.0	752.4	796.7	833.3	1,000.2	987.8
KOSPI		1,371.4	1,434.5	1,452.6	1,743.6	1,946.5	1,897.1	1,704.0	1,674.9
외환보유고		227,819	238,387	243,386	250,223	256,848	261,770	263,778	257,584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6		CY2007				CY2008	
	3/4	4/4	1/4	2/4	3/4	4/4	1/4	2/4
보 험	89,600	115,113	95,422	106,338	93,397	108,974	85,391	106,256
- 생 보	69,91	94,257	74,700	83,189	70,215	84,269	64,517	79,050
- 손 보	19,686	20,856	20,722	23,149	23,182	24,705	20,874	27,206
은 행	128,483	181,165	33,002	101,574	8,442	204,778	214,006	235,332
- 일 반	82,785	165,339	-2,513	114,075	-42,781	187,062	142,969	291,219
- 신 탁	45,698	15,826	35,515	-12,501	51,223	17,716	71,037	-55,887
증 권	48,065	13,445	29,858	85,722	37,556	-13,605	6,184	47,423
투 신	25,649	97,260	73,030	163,893	112,258	269,007	377,948	239,132
중 금	53,010	10,350	60,303	79,432	37,691	14,457	34,881	43,348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통계표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36,266	130,166	34,612	34,008	35,507	37,275	141,403	34,444
	성장률	14.3	8.6	14.7	8.6	9.6	2.8	8.6	-0.5
	구성비	21.3	19.6	19.9	19.3	16.5	20.2	18.8	18.8
사망	보험료	72,985	285,637	73,721	73,777	75,176	75,026	297,700	74,786
	성장률	5.3	5.3	5.8	4.1	4.2	2.8	4.2	1.4
	구성비	42.5	43.0	42.3	41.8	34.9	40.6	39.6	40.9
생사 혼합	보험료	17,619	67,918	16,830	16,266	16,754	16,193	66,043	15,267
	성장률	0.6	-6.4	0.8	-2.2	-1.3	-8.1	-2.8	-9.3
	구성비	10.3	10.2	9.7	9.2	7.8	8.8	8.8	8.3
변액 보험	보험료	30,717	115,278	37,097	43,514	48,117	45,184	173,912	47,399
	성장률	-0.1	37.5	35.0	57.2	63.6	47.1	50.9	27.8
	구성비	17.9	17.3	21.3	24.7	22.3	24.5	23.2	25.9
개인계	보험료	157,587	598,999	162,260	167,565	175,555	173,678	679,058	171,896
	성장률	5.5	9.4	12.6	14.4	16.3	10.2	13.4	5.9
	구성비	91.9	90.1	93.2	95.0	81.4	94.0	90.4	94.0
단체	보험료	13,960	65,550	11,924	8,848	40,120	11,006	71,898	10,945
	성장률	23.6	-2.5	-8.9	-3.7	36.9	-21.2	9.7	-8.2
	구성비	8.1	9.9	6.8	5.0	18.6	6.0	9.6	6.0
합계	보험료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184,684	750,956	182,840
	성장률	6.8	8.1	10.8	13.3	19.7	7.7	13.0	5.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증가율 · 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 보 험	지급보험금	22,133	81,619	20,781	25,507	29,931	28,143	104,361	22,838	
	증가율	-0.9	2.2	13.1	22.2	47.8	27.2	27.9	9.9	
	지급률	61.0	62.7	60.0	75.0	84.3	75.5	73.8	66.3	
사 보 험	지급보험금	29,430	112,019	27,583	29,735	32,928	33,482	123,728	31,371	
	증가율	7.7	13.0	6.5	2.5	19.0	13.8	10.5	13.7	
	지급률	40.3	39.2	37.4	40.3	43.8	44.6	41.6	41.9	
생 존 보 험	지급보험금	18,379	73,480	18,237	22,531	35,605	26,600	102,973	18,738	
	증가율	-21.2	-33.0	0.9	23.2	90.0	44.7	40.1	2.7	
	지급률	104.3	108.2	108.4	138.5	212.5	164.3	155.9	122.7	
변 액 보 험	지급보험금	8,074	21,616	11,149	15,209	18,683	13,981	59,022	14,882	
	증가율	227.8	299.1	236.2	273.1	203.9	73.2	173.0	33.5	
	지급률	26.3	18.8	30.1	35.0	38.8	30.9	33.9	31.4	
개 보 험 계	지급보험금	78,016	288,734	77,750	92,981	117,147	102,206	390,084	87,830	
	증가율	3.4	-1.8	18.4	28.7	60.9	31.0	35.1	13.0	
	지급률	49.5	48.2	47.9	55.5	66.7	58.8	57.4	51.1	
단 체 보 험 계	지급보험금	18,831	62,425	13,246	13,217	14,259	17,961	57,080	15,960	
	증가율	0.5	1.0	-23.1	-2.1	8.4	-4.6	-8.6	20.5	
	지급률	134.9	95.2	111.1	149.4	35.5	163.2	79.4	145.8	
전 체	지급보험금	96,847	351,159	90,995	106,198	131,406	120,168	447,164	103,790	
	증가율	2.8	-1.3	9.8	23.9	52.9	24.1	27.3	14.1	
	지급률	56.5	52.8	52.2	60.2	60.9	65.1	59.5	56.8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통계표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 모 존 형	사업비	6,917	24,956	7,062	7,736	8,215	8,369	31,382	8,427	
	증가율	25.2	33.9	27.0	28.3	27.4	21.0	25.7	19.3	
	사업비율	19.1	19.2	20.4	22.7	23.1	22.5	22.2	24.5	
사 모 망 형	사업비	18,947	69,813	17,655	18,279	20,519	20,732	77,185	18,388	
	증가율	15.3	7.0	11.2	6.7	14.9	9.4	10.6	4.2	
	사업비율	26.0	24.4	23.9	24.8	27.3	27.6	25.9	24.6	
생존모 사 합 형	사업비	5,951	22,656	5,454	6,558	7,401	7,330	26,744	7,456	
	증가율	-2.8	-1.0	-5.5	21.5	33.6	23.2	18.0	36.7	
	사업비율	33.8	33.4	32.4	40.3	44.2	45.3	40.5	48.8	
개 인 보 형 계	사업비	31,815	117,425	30,172	32,574	36,135	36,430	135,311	34,271	
	증가율	13.3	10.0	10.9	14.0	21.1	14.5	15.2	13.6	
	사업비율	20.2	19.6	18.6	19.4	20.6	21.0	19.9	19.9	
단 체 보 형 계	사업비	1,042	3,499	760	784	979	985	3,507	855	
	증가율	23.3	9.3	-0.6	-0.6	17.0	-5.5	0.3	12.5	
	사업비율	7.5	5.3	6.4	8.9	2.4	8.9	4.9	7.8	
전 체	사업비	32,856	120,924	30,932	33,358	37,114	37,415	138,818	35,127	
	증가율	13.6	10.0	10.6	13.6	21.0	13.9	14.8	13.6	
	사업비율	19.2	18.2	17.8	18.9	17.2	20.3	18.5	19.2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758	3,132	743	679	878	775	3,075	701
	성장률	-3.5	-3.4	-1.8	-5.2	-2.6	2.3	-1.8	-5.7
	구성비	1.0	1.1	0.9	0.8	1.0	0.9	0.9	0.8
해 상	보험료	1,314	6,323	1,735	1,783	1,486	1,514	6,518	2,166
	성장률	10.9	19.9	-17.4	11.2	13.9	15.2	3.1	24.9
	구성비	1.7	2.1	2.2	2.2	1.6	1.7	1.9	2.4
자동차	보험료	25,106	96,492	25,838	26,913	27,900	27,444	108,095	27,397
	성장률	13.6	9.8	14.3	10.6	14.1	9.3	12.0	6.0
	구성비	32.9	32.6	32.6	33.0	30.3	31.7	31.8	30.6
보 증	보험료	2,718	11,428	2,424	2,341	2,602	2,573	9,940	2,814
	성장률	3.4	13.5	-18.4	-12.2	-15.3	-5.3	-13.0	16.1
	구성비	3.6	3.9	3.1	2.9	2.8	3.0	2.9	3.1
특 종	보험료	5,872	24,987	6,584	6,728	7,455	6,478	27,245	7,209
	성장률	14.0	9.1	7.2	9.2	9.4	10.3	9.0	9.5
	구성비	7.7	8.4	8.3	8.2	8.1	7.5	8.0	8.1
해 외 원보험	보험료	184	823	191	254	298	383	1,126	224
	성장률	6.4	35.2	22.4	23.9	7.1	108.7	36.8	16.9
	구성비	0.2	0.3	0.2	0.3	0.3	0.4	0.3	0.2
장 기	보험료	37,072	136,802	38,628	39,850	41,650	43,308	163,436	44,857
	성장률	23.9	21.5	22.4	19.5	19.6	16.8	19.5	16.1
	구성비	48.6	46.2	48.7	48.8	45.2	50.0	48.1	50.1
개 인 연금	보험료	2,136	7,975	2,265	2,388	2,629	2,713	9,995	2,907
	성장률	19.4	14.3	23.4	26.8	24.0	27.0	25.3	28.3
	구성비	2.8	2.7	2.9	2.9	2.9	3.1	2.9	3.2
퇴 직 보 험	보험료	1,149	7,868	892	724	7,303	1,471	10,390	1,274
	성장률	52.8	2.1	-21.2	-47.2	73.2	28.1	32.1	42.8
	구성비	1.5	2.7	1.1	0.9	7.9	1.7	3.1	1.4
계	보험료	76,309	295,829	79,300	81,659	92,201	86,658	339,818	89,550
	성장률	18.3	15.0	14.5	12.9	18.3	13.6	14.9	12.9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통계표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4/4	1/4	2/4	3/4	4/4	1/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39.6	40.9	47.0	44.0	44.2	43.0
	사업비율	45.6	49.6	44.0	47.4	45.9	45.0
	합산비율	85.2	90.5	90.9	91.3	90.1	88.0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2.1	47.3	54.8	58.7	57.7	52.9
	사업비율	33.5	32.7	31.9	31.8	32.6	31.1
	합산비율	85.6	80.0	86.7	90.6	90.3	84.0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9.0	73.6	73.7	73.9	73.0	68.1
	사업비율	31.8	29.8	30.7	31.0	31.2	31.3
	합산비율	110.7	103.4	104.5	104.9	104.2	99.4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3.4	28.0	24.3	17.8	19.5	23.7
	사업비율	21.5	16.0	20.4	13.5	17.8	26.0
	합산비율	44.9	43.9	44.7	31.3	37.4	49.7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5.3	54.3	56.5	58.2	60.4	57.8
	사업비율	26.2	24.7	25.0	25.6	26.8	24.6
	합산비율	81.5	79.0	81.5	83.8	87.2	82.3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4.7	26.8	29.4	30.6	34.6	38.1
	사업비율	93.2	62.1	70.5	66.0	73.7	76.6
	합산비율	137.9	88.9	99.8	96.6	108.3	114.7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3.9	81.8	81.5	81.3	80.7	80.0
	사업비율	18.4	17.9	18.2	18.4	18.9	18.8
	합산비율	102.3	99.7	99.7	99.8	99.6	98.8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25.4	115.8	116.0	116.4	121.7	115.7
	사업비율	9.4	9.4	9.6	9.9	10.5	12.1
	합산비율	134.8	125.2	125.6	126.3	132.2	127.8
전 체	경과손해율	78.6	75.8	75.9	75.9	75.7	73.7
	사업비율	23.8	22.4	23.0	23.0	23.5	23.5
	합산비율	102.3	98.2	98.9	98.9	99.2	97.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 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연구조사자료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대응방안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정책연구자료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6.11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비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회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정기간행물

■ 월간

-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 보험동향
- ☐ 보험개발연구

■ 연간

-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 (년3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 ·보험동향(계간)	-보험개발연구 (년3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영문발간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영문발간자료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68-4414, 4415 팩스 : (02)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08년 가을호(통권 47호)

2008년 10월

발행인 나 동 민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400
인 쇄 소 대 화 인 쇄
전 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68-4422 368-4423)로 연락하여 주십시오.